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2012 정책발표회

현실이 된다, 시민 미디어의 힘!!

◎ 일시 : 2012년 2월 7일(화) 오전 10:30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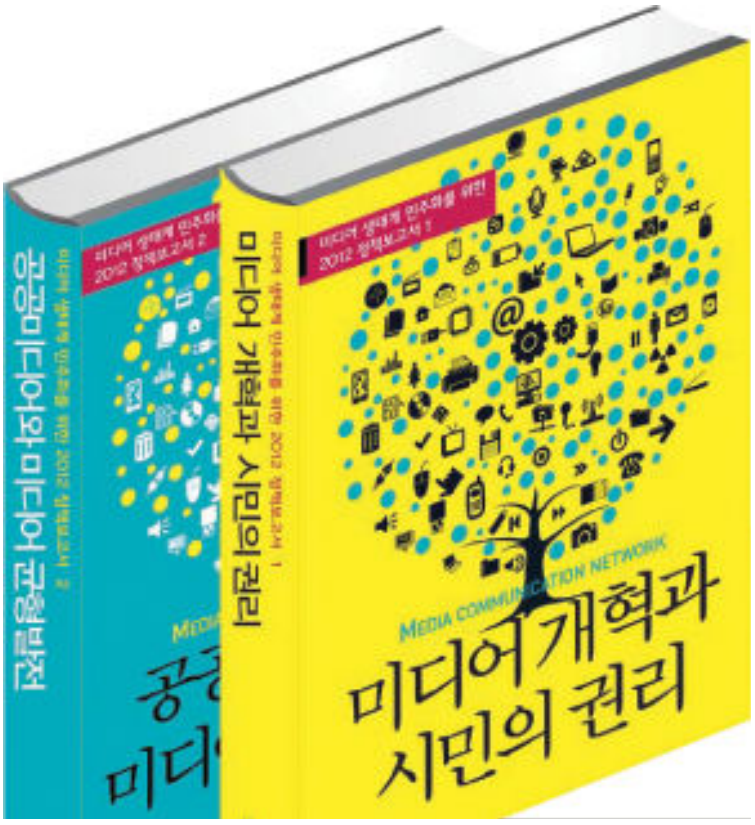

[순서]

0.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순서

1.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활동경과

2.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집필위원.편집위원.발간위원 소개

3.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목차 소개

4.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정책 발표

5.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향후 계획

6.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선언문

0.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순서

(전체사회)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 **개회**
- **인사말**
  - 이강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 원용진 서강대학교 교수
- **내빈 소개**
- **활동 경과**
  - 강진구 경향신문노조 위원장
- **집필위원.편집위원.발간위원 소개**
- **목차 소개**
- **발간사**
  -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 **발간 축사**
  -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 유시민 통합진보당 대표
  - 홍세화 진보신당 대표
  - 강상현 한국방송학회 회장(차기)
  - 김승수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
- **떡 나누기**
- **2012 미디어정책 발표**

  (사회) 원용진 서강대학교 교수

  <정책발표①> 총론 :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

  <정책발표②> 패러다임 의제 : 유영주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정책발표③> 이용자 의제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정책발표④> 규제 의제 : 김경환 상지대학교 교수

  <정책발표⑤> 방송 의제 : 이영주 내밀사회문화연구소 소장

  <정책발표⑥> 주춧돌 의제 : 장지호 전국언론노조 정책국장
- **18대 국회 소회와 19대 국회 제언**
  - 최상재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 **향후 계획**
  - 이상훈 전북대학교 교수
-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선언문 낭독**
  - 강병규 지역방송협의회 정책위원
  - 노영란 매비우스 사무국장
- **폐회**

1.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활동경과

○ 3월25일(금) 미디어단체 활동가, 전.현직 언론노조 위원장 등 수명이 모여 2012년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대안 정책 생산 필요성 공감. 미디어단체 정책활동가, 노조.현업 정책역량, 학계 연구자 등 개인이 참여하는 네트워크(포럼) 구성 논의

○ 4월12일(화) 목표, 위상, 구성, 프로세스 등 논의

○ 4월30일(토) 활동의 대강, 보고서의 명칭, 운영, 개별주제 기획안 등 논의

○ 5월14일(토) 보고서의 체계 논의

○ 5월30일(월) 보고서의 기조와 패러다임 논의

○ 6월 8일(수) 기조/체계/구성을 위한 접근방법으로 (1)네트워크, 플랫폼, 채널 등 가치사슬 차원에서 접근, (2)매체별로 접근하되 재구성과 쟁점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접근, (3)헌법적 권리(기본권), 커뮤니케이션권리의 맥락에서 접근, (4)공영방송/지상파 공공성 맥락에서 접근 등 검토

○ 6월23일(수) 기조/체계 접근방법(1) '헌법 기본권을 중심으로'(최선욱) 토론

○ 7월 4일(수) 접근방법(2) '공공성 논의 중심의 미디어 정책 수립 방향'(이상훈) 토론
접근방법(3) '진보개혁 미디어정책의 이슈와 주제'(이영주) 토론
접근방법(4) '방송시장 획정방안의 틈새와 자기결정권 강화'(김동원) 토론
접근방법(5) '미디어 공공영역의 강화'(유영주) 토론

○ 7월14일(목) 커뮤니케이션 정책트리 골격 정리. 방통위, 방통심의위, 9-11월 중 의제별 공개세미나 계획 논의

○ 8월19일(금)-20일(토) 개별의제 30여개 확정. 개인필자는 1인 1의제 집필을 원칙으로, 분량은 A4 20장을 기준으로 잡고, 하반기 운영 기획팀 10여 명 구성

○ 8월31일(수) 주요의제(미디어주권/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영방송지배구조/지상파방송재편/수신료/주파수/망/신문/미디어렙) 내용 생산 책임자 선정

○ 9월 7일(수) 목차 1차 검토. 10월-12월 중 10회차에 걸쳐 전체 40여개 의제 중 20여개 의제 공개토론회 추진 논의

○ 9월15일(목) 목차 2차 검토

○ 9월23일(금) 총론 의제(1) '개혁-진보적 정책의 좌표와 방향'(이영주) 토론
총론 의제(2) '시민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주권의 재구성'(전규찬) 토론
총론 의제(3) '신자유주의와 미디어 영역'(이상훈) 토론

총론 의제(4) ‘미디어 공공영역의 민주화/전복을 위하여’(유영주) 토론

○ 10월 5일(수) 내부토론회 ‘미디어체제 어떻게 바꿀 것인가’ 개최

○ 10월17일(월) 미디어생태계 지도 공유. 원고마감, 발간, 정책발표회 일정 확정

○ 11월 4일(금)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 및 연속토론회(1) ‘지역방송의 제자리 찾기’와 연속토론회(2)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하여①’ 진행

○ 11월10일(목) 연속토론회(3) ‘지주회사 SBS, 지상파방송서비스 가능할까’ 진행

○ 11월10일(목) 연속토론회(4) ‘방송광고 제도 개편과 미디어 균형발전’ 진행

○ 11월11일(금) 연속토론회(5) ‘인터넷 내용심의, 행정심의에서 자율규제로’ 진행

○ 11월11일(금) 연속토론회(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어떻게 할 것인가’ 진행

○ 11월15일(화) 연속토론회(7) ‘유료방송 시장 획정과 공정경쟁 환경 조성’ 진행

○ 11월15일(화) 연속토론회(8) ‘국민의 기본권 입장에서 본 디지털 전환’ 진행

○ 11월22일(화) 연속토론회(9) ‘장애인 미디어권의 현황과 과제’ 진행

○ 11월23일(수) 연속토론회(10) ‘수신료 인상 평가와 수신료 제도 개선’ 진행

○ 11월23일(수) 연속토론회(11) ‘표현의 자유와 미디어’ 진행

○ 11월24일(목) 연속토론회(12) ‘방송. 통신 규제기구 개편 방향’ 진행

○ 11월25일(금) 연속토론회(13) ‘뉴스통신진흥법 이대로 좋은가’ 진행

○ 11월25일(금) 연속토론회(14) ‘신문 산업의 위기 극복과 공적 지원 방안’ 진행

○ 11월28일(월) 연속토론회(15) ‘교육문화 기간공영방송 EBS 공적책무강화’ 진행

○ 11월28일(월) 연속토론회(16) ‘디지털 미디어환경 미디어교육’ 진행

○ 11월30일(수) 연속토론회(17) ‘다매체 시대, 미디어교육 정책’ 진행

○ 11월30일(수) 연속토론회(18) ‘700MHz와 지상파 차세대방송,다채널방송’ 진행

○ 12월 2일(금) 연속토론회(19) ‘지상파방송 제작자율성 제도 개선 방안’ 진행

○ 12월 7일(수) 연속토론회(20)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 진행

○ 12월 7일(수) 연속토론회(21) ‘지상파방송 제도 변화 정책적 과제’ 진행

○ 12월12일(월) 연속토론회(22)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하여②’ 진행

○ 12월12일(월) 원고마감, 발간 일정 확인 및 10여 명의 원고검토팀 구성

○ 1월 6일(금) 2월초 서울지역 정책발표회 및 전국 순회토론회 추진 논의. 총선 공약 발표 준비. 미디어 관련법 제개정안 마련 연구작업 계획 논의

○ 2월 7일(화) 2012 미디어 정책보고서 발간 및 정책발표회 개최

2.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집필위원.편집위원.발간위원 소개

<집필위원>

강기석 전 신문유통원 원장
강성남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강진구 경향신문노조 위원장
김경환 상지대학교 교수
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1팀장
김순기 경인일보 논설위원
김재영 충남대학교 교수
김주완 경남도민일보 편집국장
김진웅 선문대학교 교수
김철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정책실장
노영란 매비우스 사무국장
류한호 광주대학교 교수
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
박규민 장애인미디어운동네트워크 활동가
박성규 미래방송연구회
박영선 언론개혁시민연대 대외협력국장
박채은 미디어 활동가
방현철 미래방송연구회
백종환 에이블뉴스 대표
신학림 전 신문발전위원
양병호 IT전문가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원용진 서강대학교 교수
유영주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윤성한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윤익한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2팀장
이상훈 전북대학교 교수
이안재 옥천신문 대표
이영만 대전방송노조 위원장
이영주 내밀문화사회연구소 소장
이재명 미래방송연구회
이진성 CBS노조 사무국장
이창형 미래방송연구회
이호진 부산일보노조 위원장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장지호 전국언론노조 정책국장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채수현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최선욱 전국언론노조KBS본부 사무처장

최성은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사무국장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최영규 대전MBC노조 위원장
최영묵 성공회대학교 교수
최해운 전 뉴시스 대표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허 경 한국영상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장

<편집위원>
강병규 지역방송협의회 정책위원
강진구 경향신문노조 위원장
김경환 상지대학교 교수
노영란 매비우스 사무국장
박상호 한국방송협회 전문연구원
안정상 고려대법학연구소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유영주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이영주 내밀문화사회연구소 소장
장지호 전국언론노조 정책국장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채수현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최선욱 전국언론노조KBS본부 사무처장
최영묵 성공회대학교 교수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허 경 한국영상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장

<감수>
최영묵 성공회대학교 교수

<발간위원>
김광호 미래방송연구회 회장
김대환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김명준 미디액트 소장
류신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장
양창근 한국방송기술인연합 회장
박종률 한국기자협회 회장
원용진 문화연대 집행위원장
이강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이상훈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이사장
이 송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임순혜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정대균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최상재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황대준 한국PD연합회 회장

3.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목차 소개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2012 정책보고서 ①

미디어 개혁과 시민의 권리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선언문
- 제1권 여는 글

<Ⅰ> 총론

1. MB시대 '청산'을 위한 미디어 정책 방향(최영묵)

<Ⅱ> 미디어 정책 패러다임 전환

2. 미디어-문화 생태계의 새 패러다임(원용진)
3. 커뮤니케이션 주권론을 제안한다(전규찬)
4. 신자유주의와 미디어 공공영역(이상훈)
5. 미디어 공공영역 민주화 전략(유영주)
6. 미디어 개혁 정책 좌표(이영주)

<Ⅲ> 수용자/이용자 권리

7.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의 현주소(박경신)
8.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장여경)
9.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 방향(오병일/장여경)
10. 디지털 시대 저작권과 이용자 권리(오병일)
11. 시청자 주권의 현실화 방안(노영란)
12. 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확대 방향(김철환/박규민/백종환)

<Ⅳ> 규제/규제기구 개혁

13. 방송통신규제기구 개편 방향(채수현)
14. 언론중재위원회 개편 방향(최성주)
15. 방송심의 개선 방안(최영묵/윤여진)
16. 통신심의 개선 방안(양홍석)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2012 정책보고서 ②

공공미디어와 미디어 균형발전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선언문
-제2권 여는 글

<V> '공공서비스 방송' 발전 방향
17. 지상파방송제도의 발전 방향(이영주)
18. 지상파방송 제작자율성 확대 방향(박영선)
19.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향(김경환)
20.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 개선 방향(김진웅/유영주)
21. EBS 공적책무 강화 방향(윤익한)
22. SBS 지배구조 개혁 방향: 지주회사 중심으로(추혜선)
23. 지역방송 정책 방향(김재영/류한호)

<VI> 주춧돌미디어 위상 재정립
24. 신문산업 지원 방안(강기석/강성남/강진구/김순기/김주완/신학림/이안재)
25. 공동체(풀뿌리)방송의 제도화 방안(박채은/최성은/허경)
26. 국가기간통신사 개선 방안(최해운)

<VII> 디지털 의제: 시민을 위한 미디어 기술
27. 디지털 전환과 국민의 기본권(최선욱)
28. 700MHz 주파수 정책방향(박성규/방현철/이재명/이창형)
29. 방송시장 획정과 이용자 선택권(김동원)
30. 망중립성 정책 방향(양병호/오병일/윤성한)

<VIII> 미디어와 '과거 청산'
31. 정수장학회 정비 방안(이호진)
32. 방송광고 정책과 미디어균형발전(이영만/이진성/장지호/조준상/최영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소개
= 활동 경과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 집필위원/편집위원/발간위원

4.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정책 발표

1 <총론> MB시대 '청산' 을 위한 미디어 정책 방향

1. 미디어 환경 변화와 미디어 정책 과제

1) 미디어 '융합' 양상

❍ 융합(convergence)이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서비스의 개발, 규제완화와 경쟁의 활성화로 인해 통신네트워크와 방송네트워크의 구분이 없어지고 통신서비스와 방송서비스의 구분이 어려워지며, 통신단말기와 방송단말기의 구분이 무의미해지는 등 기존의 통신과 방송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현상'
- 융합이라는 개념은 지나치게 기술중심주의 시각에서 논의되어 온 경향
- 융합을 이용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대표적인 입장이 볼터와 그루신(Bolter & Grusin, 1999)의 재매개(remediation)개념 유용.

2) 융합과 방송산업

❍ 시장경쟁을 중심으로 하는 탈규제(deregulation)의 논리가 확산. 국내에서도 1995년 케이블 도입, 2002년 위성방송 도입, 2005년 DMB 도입, 2008년 IPTV 도입,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등 신규사업자들이 방송플랫폼에 계속 진입. 문제는 국내의 경우 여러 플랫폼이 단기간에 도입되면서 방송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플랫폼은 넘쳐나는 데 반해 콘텐츠는 별반 차이가 없음. 결국 신규 플랫폼 사업자 사실상 실패
- 국내 협소한 방송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음.
- 정책적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새로운 방송 플랫폼들이 도입됨.

3) MB정권 이후 대한민국 미디어

❍ MB정권의 성격: ‘수구동맹’ ‘약탈국가’
- 수구동맹이란 ‘친기업적 경제성장 위주의 논리, 군사적 국가안보 위주의 논리를 추종하는, 매우 강력한 권위와 권한을 가진 집단과 개인의 공적, 사적 조직 및 이들 조직 간의 단단한 네트워크'
- 약탈국가의 속성: 약탈에 방해가 되는 세력이나 집단을 대화와 소통의 대상이 아니라 격리와 제거의 대상으로 삼는다.

❍ MB정권이 미디어 공공영역, 미디어 산업에 미친 영향
- 거시 정책 부재에 따른 미디어 산업의 국내외적 경쟁력 하락
- 공영서비스방송, 시민 참여 영역 무력화(사실상 해체 시도)
- 종편 등 특혜성 사업자 선정에 따른 미디어 생태계 대혼돈
- 낙하산 인사, 검경, 법원 동원한 전방위 언론통제에 따른 표현의 자유 위축

4) 융합시대 미디어 정책 과제

❍ OECD(2004)의 융합정책 목표(경제와 사회/문화)
(경제적 목표)
- 경쟁을 촉진하고 유지하며 가격을 최소화하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질을 최대화
- 투자와 혁신을 장려
- 커뮤니케이션 분야가 경제 성장과 활성화에 공헌하도록 하는 것
- 주파수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

(사회문화적 목표)
- 전화, 방송, 인터넷 접속에 있어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
- 미디어의 다원성 보장
- 콘텐츠에 문화적 다양성과 국가적 정체성 반영
- 이용자 보호와 사생활 보호

❍ 융합시대 대한민국 미디어정책의 목표

<그림> 방송통신 융합 정책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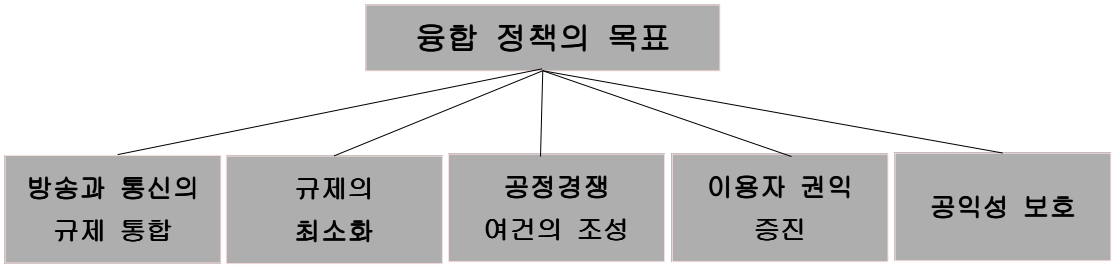

2. 미디어 이론에 대한 재고

❍ 사익추구, 권력추구 전면화하고 책임을 방치하는 언론에 대한 사회적 개혁 논의 필요

- 언론의 본질은 권력을 비판하고 개혁을 의제화 함으로써 사회의 건전한 발전 도모에 있음. 언론이 본령을 벗어나 스스로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 기승을 부리게 될 때 필연적으로 언론개혁 문제가 제기

❍ 사회 통합, 환경감시, 상관조정, 사회적 유산의 전수, 오락 기능과 같은 전통적 미디어 규범적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하거나 해소되고 있음. 특히 소셜미디어 전면화 시대에 부합할 수 있는 미디어 이론의 재구성 필요.

- 미디어 공론장의 재구성
- 사회책임론의 복원
- 공공미디어와 사회적 책무(Accountability) 재확인
- 정통저널리즘과 표출저널리즘 동일성과 차별성 이해
- 미디어생태학 패러다임과 소셜미디어의 역할

3. 미디어 개혁 정책 방향

1) MB '파시즘체제'와 미디어의 '위기'

❍ 한국 미디어 시장의 주류미디어는 모두 '정파언론'으로 전락하고 있음. 게다가 공공서비스를 사업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공영방송들조차 정권비호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한국에서 주류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소통은 사실상 단절 상황 임.

<표> 언론의 유형

소유방식 / 논조 유형	사 영	공 영
계도성	**정파 언론** (Partisan Media)	**정파적** 계도 언론 (Enlightenment Media)
다양성	**정파적** 권위 언론 (Authority Media)	**정파적** 공공서비스 언론 (Public Service Media)

-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며 한국 언론미디어는 한동안 민주주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미디어라는 새로운 가능성 보여줌, MB정권의 '탈법'과 '불법'에 의한 미디어 정책으로 한국 미디어정책, 미디어 시장 상황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로 회귀. 앞의 <표 1>에서 보듯 MB정권 4년간 국내 모든 제도권 언론미디어는 '정파언론' 성격이 강해졌음.

2) 언론정책, 기본으로 돌아가기

❍ 신자유주의와 디지털 시대 언론미디어 정책의 핵심은 공정경쟁, 재원의 합리적 배분, 보편 서비스와 콘텐츠 다양성 보호에 있음. 방치할 경우 소수의 대자본이 미디어 시장 전체를 지배하게 됨. 광고를 비롯한 미디어 재원의 합리적 배분구조 형성, 유지 중요.

❍ 언론정책은 미디어, 민주주의, 시민참여에 대한 철학적 성찰에 근거해야 함. 대부분의 집권세력은 언론자유와 공익성, 공공성을 표방했지만 이를 깊이 있게 성찰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근거로 삼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 한국 언론정책의 한계이자 현주소. 스마트시대를 맞아 SNS를 중심으로 미디어 산업이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글로벌 레벨과 국가적 수준, 지역 미디어 상황을 고려한 미디어 정책 수립이 시급.

- 미디어정책의 근간은 미디어 영역에 무관하게 각 개인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중핵으로 해야 함. 표현의 자유는 미디어 존재의 근거인 동시에 미디어 콘텐츠 경쟁력의 기반
- 미디어 종다양성의 보장. 여론다양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미디어의 생존이 가능해야 함. 미디어 종다양성이 붕괴되면 여러 가지 사회적 의견의 개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후퇴

2 미디어-문화 생태계의 새 패러다임

1 새 미디어 생태계와 새 패러다임

o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의 등장은 새로운 인식론의 출현을 예고. 하지만 오랫동안 생태계 변화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이 없었음.

o 새로운 생태계를 외면하거나, 변화로 인식하지 않으려 하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상하기 위한 의지도 많지 않은 탓에 미디어와 관련된 사회적 움직임(혹은 미디어 운동)은 답보 상태

2 매개의 시대와 재매개의 시대

o 대중매체의 시대를 넘어 전혀 새로운 매체 시대가 왔다는 전언에도 그러했음. 매개의 시대를 넘어 재매개의 시대가 왔다며 대중이 열심히 그를 향하고 있어도 매개의 시대를 주도하던 매체에 대한 관심이 주를 이룸

o 새로운 매체 시대,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절실한 시기임

o 부르디외가 그런 절실함에 실마리를 주고 있음. 장 이론과 아비투스 개념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성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미디어 생태계 안에 여러 장들이 존재하고 그 장 내의 동학에 맞춘 아비투스가 존재한다는 사실 탓에 미디어 생태계는 이질적이고 분절적이며 경쟁적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o 그런 탓에 언제나 모순이 생산되고 미디어와 관련된 사회적 움직임의 방향이 명료해짐. 그런 모순을 찾고, 새로운 운동 주체를 구하며, 하부의 장들 간의 절합을 꾀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요구됨

3 새 미디어 생태계 시대의 미디어운동

o 미디어타니제이션 : 기존의 미디어 운동은 미디어타이제이션 전반에 대한 거부 운동이었을 가능성이 큼. 미디어 운동이 어떻게 새로운 운동과 절합할 것인가를 충분히 고민해야 할 것

o 아비투스로 인한 균열 : 매체의 특정 국면에서 일정 성향을 가진 매체 내 지식 생산자 및 유통자에 말 걸기가 소중한 개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

o CMC의 시대 : 앞으로의 미디어 운동은 매체의 안팎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중적이고, 매체 종사자와 비종사자간 절합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중적이고, 올드 미디어와 뉴미디어의 절합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중적이며, 매개와 재매개간 절합이어야 함에 이중적임. 그런 점에서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에서 펴야 하는 사회적 움직임은 불가피하게 다중적일 수밖에 없음

3 커뮤니케이션 주권론을 제안한다

1 자유언론과 민주/공화제의 위기

- o 신자유주의 시대 미디어의 공적 공간을 탈취코자 하는 자본/국가의 의지는 현 정권의 교체와 무관하게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 미디어 공공성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 그로 인한 민주 정치의 위험은 현 정권의 교체로서 마무리되지 않을 일종의 구조적 문제임
- o 이명박 정부가 미디어 공적 영역 전반에 행한 조치들은, 경제적 이해관계 혹은 자본권력의 이익을 대리해 소위 상부구조로서의 국가가 공공부문을 해체한다는 기능적 도식으로 만족스럽게 규명되지 않음. 그래서 경제적인 것으로 환원되지 않는, '정치적인 것'에 대한 분석과 설명이 요구됨
- o 현재의 반정치적인 정세와 그 효과는 공공성/공통성 장치/체계의 위기, 그리고 인·민의 자유로운 표현 및 회집, 언론 행위로 정리되는 시민 언론/커뮤니케이션 권리/주권의 위기 등 이중의 위기임

2 대중소통과 제국 시대 주권의 재구성

- o '정치적인 것'의 문제와 '공공/공통적인 것'의 문제, 그리고 '언론/커뮤니케이션 주권'이라는 것의 문제를 상호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파악하면서, 나머지 두 요소를 포함하지 않은 다른 한 요소의 실현을 불가능한 프로젝트
- o 언론/커뮤니케이션의 실천적 중요성을 민주/정치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며, 그 가치의 제고를 위해 '권리(right)'의 개념이 아닌 주권(sovereignty)의 이념 채택이 요구됨
- o 이는 향후의 정권에서도 계속해서 언론/커뮤니케이션의 위기 즉 정치의 위기가 지속/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가/자본권력이 결코 무력화시킬 수 없는 자유 언론/공평한 커뮤니케이션의 불가침적 권리를 '주권'이라는 이념으로 분명히 하기 위해서임

3 언론/커뮤니케이션 주권 실행 전략

- o 공영방송이라는 사회적 도메인이 지닌 의미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공/통성과 언론/커뮤니케이션 주권의 문제를 미디

어 공공성, 지상파방송, (공영)방송 문제로 축소할 수 없음

- o 공영방송 시스템 위기의 상태에서도,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정치의 대안적 공간 구성가능성과 이를 통한 대중교통=대중정치의 결코 진압되지 않는 활력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이론과 운동의 패러다임을 작성하는 일이 중요함
- o 진보적 미디어 운동의 목표는 이제 '공영방송 사수'의 구호에서 벗어나, 공영방송에 대한 사회적 규제의 권리와 대안 매체를 통한 시민의 자유로운 언론 및 표현의 권리를 지켜내는 데로 모아가야 함

4 신자유주의와 미디어영역

1 공공영역과 공영방송의 이중적 붕괴

o 정치권력, 자본권력, 언론권력은 민중의 사회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권력 체계라는 것이 다시 드러나고 있음. 동시에 정치권력 그 자체가 미디어 권력에 의존

o 사회적 총체적 소통의 위기에서 언론의 문제는 '독립'의 위기

- 개인, 부르주아는 합리적 소비, 수익성을 우선 시하는 소비자의 위치가 중요시
- 방송과 신문은 자본권력에의 종속이 가속화하고 내재화 되어 공공영역의 시장화 확대
- 비판적 힘의 소멸, 담론 콘텐츠 질의 저하, 공공영역의 소멸의 길로 접어듬
- 정보 수집의 합리적 기능으로서의 저널리스트의 기능은 정보생산과 생산의 독점화를 거치게 됨
- 마지막 단계로 정치권력 자본권력과의 연계, 정보생산의 규격화, 권력과의 공모로 공공영역은 명목만 남아 있게 됨

2 신자유주의하의 공공영역의 회복

o 사회 변혁은 단지 어떤 대의를 지지하는 다수 대중의 결집이 아닌 일상의 사회적 관계들을 재접합하고 파격적이고 전복적인 실천들에 의해 새로운 개념적 지평이 열리는 방식을 통해 일어남,

o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공통적인 공간으로서의 공공영역이 어떻게 변질되고 있으며 이 공간이 어떻게 공공영역으로 다시 회복가능한 지를 우리는 밝히고 그 방법을 찾아야 함

- 이태리 베를루스코니나 한국의 MB 정권은 국가권력을 개인 권력화하고 동시에 정치권력과 미디어 권력을 모두 장악
- 공공영역의 변질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삶과 관계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 필요

3 새로운 공영방송의 구축 :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PSBS

o 노쇠하고 노회한 현 공영방송체제는 이제 소멸의 시점에 도달했음

o 대항적이며 대안적인 공공영역으로서의 새로운 미디어 공공영역 구축 급선무
o 새로운 사회관계, 사회운동, 새로운 정체성의 공동체로서의 공영방송 구축 모색 필요
o 보편적 가치를 체현하는 영역으로서 공영방송조직, PSBS 형태의 공영방송 구축
  – 다양한 사회계급과 집단들로부터 끊임없이 유입되는 개인
  – 개방적이며 유연하고 다원적인 동시에 개인화된 시스템과 대응하게 되는 공공영역으로서 새로운 공영방송시스템을 제안

5 미디어 공공영역 민주화 전략

1 공공영역과 공공성, 언론(표현)의 자유

o 우리 나라 공공영역은 시장의 영향력 확장과 반비례로 축소되어왔고 신자유주의 안착과 확장으로 공공영역에서 배제/박탈당하는 주권자가 확대되면서 법과 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예외상태 정착

o 오늘 한국의 미디어 공공영역은 국가권력과 규제기관의 정치적 개입이 상당하고 대의제미디어는 위로부터 통제되고 있으며, 생산력 발달에 따른 융합의 경제적 토대는 통신자본.미디어자본이 좌지우지함

o sns를 활용하는 시민의 자율적 공공권이 위력을 발휘, 담론네트워크의 총체로서의 미디어 공공영역의 양질 변화를 역동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o 배타적 주권성을 자유와 동일시하는 리버럴리즘 식의 자유를 가져오면 이때 언론(표현)의 자유는 방송사만의 자유, 지상파만의 자유, 방송인만의 자유로 왜곡될 수 있음. 외부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사람들이 정당하게 달성.향유할 수 있는 가치로서의 언론(표현)의 자유가 필요하며, 그래서 언론(표현)의 자유는 공공성의 문제임

2 공공성, 지역성, 커뮤니케이션 주권

o 이명박 정권의 사유화 정책의 이념적 근간이 신자유주의, 사유화라고 했을 때 이에 맞서는 전략적 방향의 키워드는 보편성으로서의 공공성, 지역성, 커뮤니케이션 주권을 확보하는 것임

o 공적인 것의 해체와 사적인 것으로의 수렴은 신자유주의의 교리이지만 미디어 공공영역, 공공권으로서의 공영방송(지상파방송)의 사적인 것으로의 해체를 선언하게 되면 향후 '공공/공통적인 것'의 재구성 문제는 부차적 또는 주변부적인 것으로 다뤄질 수밖에 없음

o 공적인 것의 해체에 대한 경제적인 것으로 환원되지 않는 정치적인 것에 관심을 경주해야 함

o 전파, 수신료, 기금 등 공공성의 물적 토대로서의 공공재에 관한 공

적 철학을 견지해야 함

o 지역 정의를 삶의 단위에 기초한 개념으로 바로잡아야 함

3 미디어 민주화 전략

o 미디어 공공영역 민주화의 요체는 시장으로부터 지상파방송을 구출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의 계기를 포착하는 것임. 이는 과거로의 답습과 회귀로 귀결되지 않을 것이며, 답습과 회귀가 아닌 새로운 질적 전환은 '정치적인 것'과 '언론 커뮤니케이션 주권' 실현 여부에 달려 있음

o 독과점을 규제하고 방통위의 방송시장 획정이 갖는 시장 중심의 획정을 유무료 공공성 획정으로 바꾸어 이용자 중심과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방송 규제/진흥 방안을 마련해야 함

o 미디어 공공영역의 민주화를 위해 보편적 접근의 권리, 퍼브릭엑세스의 권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권리 등 미디어 주권자의 3대권리를 실현하는 미디어 정책이 요구됨

6 미디어 개혁 정책 좌표

1 배경 : 현안 및 문제점

o 미디어 영역에 대한 정부의 자의적인 권력의 작동은 공공 미디어 부문이든 상업 미디어 부문이든 많은 문제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미디어가 정부에 종속되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음

o 이명박 정부 들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의 '중첩적 공진' 이 미디어 규제와 정책의 방향을 매우 혼란스럽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거대 미디어 자본간의 무한경쟁 구도의 방치를 낳을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함

o 공영방송 KBS에 대한 정치적 장악, MBC에 대한 정치적 지배, 종편 허가 및 계속되는 특혜, 종편의 폭력적 행위 방치, 지역방송 및 소규모 방송 조직에 대한 무대책, 광고 시장의 전면 자유화와 양극화, 비판 언론(인)과 시민 저널리즘에 대한 규제와 탄압, 표현과 창작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와 과잉 저지, 유료방송영역의 중장기 정책의 부재와 질서없는 정글화 및 야수적 시장행위의 심화, 통신기업의 맹목적 개발주의의 방치, 통신기술의 사회적 운용에 대한 인식과 정책의 부재, 방송통신망 정책의 부재와 망 사업자의 횡포, 인터넷이나 SNS에 대한 규제 의지의 확대, FTA에 따른 국내 미디어 시장의 자생성 위협 등. 부정적 현상들의 중첩적 공진은 결국 미디어 개혁 정책을 자극하는 현실임.

o 미디어의 영역은 거대한 산업과 비즈니스이자 거친 게임의 장임. 각각의 미디어는 이러 저러한 정치적 네트워크의 한 위치를 차지하고 각자의 정치 게임을 수행하는 집단이 되었음. 화폐권력과 정치권력의 성에 동참하거나 공유하고 있는 거대 기업들과 이익집단은 민주적 미디어 생태계와 미디어의 공공적 가치를 열망하는 사람들의 비판과 저항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음. 미디어 융합과 디지털화라는 기술적 흐름을 '악용' 하거나 '남용' 하는 거대 미디어 기업들은 자신들을 중심으로 한 시장과 권력 구조를 견고화하기 위해 자신들과 정치적 운명을 함께 하는 정부와 정당, 정부기구들과의 유착과 상호 지지의 관계를 재생산하고 있음.

② 목표 : 개선방향

o 정당, 시민사회, 학계의 협력 하에 미디어 개혁의 이념적 좌표와 방향을 토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미디어 개혁 정책의 동력을 확보

③ 방법 : 제도 개선 및 법 개정

o 미디어 정책의 문화적 모델과 상업적 모델의 혼합경제의 발전
o 미디어 공공성의 재확립, 보편적 서비스와 엑세스, 공공서비스방송 체계의 재구성
o 공공서비스방송의 독립성, 자율성, 안정성의 확보와 새로운 역할과 기능의 확장
o 표현과 창작의 자유
o 방송 채널의 다원성, 언론과 프로그램의 다양성
o 지역성
o 과소 대의 집단의 대의성 확장
o 약탈적 시장행위의 규제 강화
o 독과점 방송 사업자 규제 강화
o 인권과 수용자 권리 보호
o 창조성
o 광고시장의 규제
o 국내 미디어 시장의 보호
o 보편적 복지로서 디지털 전환의 점진적 추구
o 더 단순하고 포괄적인 규제체계, 정부로부터의 독립적 규제체계
o ICT, 정보사회 정책의 콘트롤타워

7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의 현주소

1 배경 : 현안 및 문제점

o 표현의 자유의 기본원리들이 망각되어 2008-2009년 미디어생태계를 위협하는 여러 사건들이 발생함.

o PD수첩 광우병보도에 대한 공정성심의 및 형사재판, 언론소비자주권운동의 <Daum>카페 폐쇄 및 형사재판, 네티즌 “미네르바”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죄 적용 등이 대표적.

o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미디어수용자들의 소비행태 및 대응을 왜곡시키고 미디어생산자들의 생산행위를 위축시켜 미디어콘텐츠를 파편화하고 저열화함.

o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문헌들을 중심으로 도출된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구체적인 한국의 제도적 상황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2 목표 : 개선방향

o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인권기준에 어긋나는 법제도들을 철폐할 필요가 있음.

o 미디어생태계 발전을 위한 공적 통제가 미디어생태계가 필요로 하는 다양성을 위협하지 않도록 국제인권기준에 맞는 제한이 필요함.

3 방법 : 제도 개선 및 법 개정

o 진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과 관련된 모든 법적 책임 철폐

o 다양한 견해와 감정의 표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모욕죄 폐지.

o 민주주의와 공정성을 요구하는 민중들의 소통을 가로막는 ‘위력’ 업무방해죄 폐지

o 행정기관에 의한 매체심의 폐지를 통해 합법적인 표현물들이 위축되는 현상 종식.

o 표현에 대한 공적 통제나 공적 지원에 있어서 견해차에 따른 차별금지원리 확립. 예를 들어 방송의 공정성 심의는 국가정책에 대한 방송에는 적용하지 않음.

8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1 배경 : 현안 및 문제점

o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행정심의가 인터넷 표현물의 유통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정부 비판을 규제함

o 포털 등 온라인 사업자가 과도한 임시조치로 인터넷의 공공 비판을 억제함

o 인터넷에서 저작물의 공정 이용이 자유롭지 않음

o 명예훼손이나 허위라는 이유로 인터넷 표현물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도하게 이루어짐

o 국가적인 인터넷 실명제와 이를 토대로 수집된 이용자 정보가 정보수사기관에 과다 제공되면서 이용자를 위축시킴

2 목표 : 개선방향

o 인터넷 행정심의 등 인터넷 규제 제도의 위헌성 제거

o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등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권고에 부합하는 법 제도 개선

o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최대 보장 및 위축 효과(chilling effect) 제고

o 익명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권 보장

3 방법 : 제도 개선 및 법 개정

o 행정심의 폐지

o 자율규제 촉진과 공공적 운용

o 저작물의 공정이용 보장

o 명예훼손과 허위를 이유로 한 형사처벌 폐지

o 인터넷 실명제 폐지

o 이용자 정보 제공과 감청에 대한 법원의 통제 강화, 패킷 감청 중단

9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 방향

1 배경 : 현안 및 문제점

o 대량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함. 인터넷 실명제 등에 의해 주민번호 수집을 조장하고 있어 피해가 더 심각함.

o 스마트폰 대중화와 위치기반 앱 다양화로 개인에 대한 추적, 감시의 우려가 있으나, 현행 「위치정보법」의 현실 대응에 한계가 있음.

o 수사기관에 의한 영장없는 통신자료의 제공 요청,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 의무화, 기지국 수사, 실시간 위치추적, 제대로 통제되지 않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감청 등 국민의 통신비밀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2 목표 : 개선방향

o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인증 및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해야 함.

o 개인식별 가능성있는 위치정보에 대한 엄격한 보호 필요

o 통신감청에 대한 요건 강화 및 법원에 의한 실질적인 통제 필요.

3 방법 : 제도 개선 및 법 개정

o 인터넷 실명제 폐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서 주민번호 수집 의무화 삭제 등 민간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

o 「위치정보법」의 모호한 규정을 현재의 모바일 환경에 맞게 수정하되, 개인식별 가능성있는 위치정보에 대한 엄격한 보호.

o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최소화하고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10 디지털 시대 저작권과 이용자 권리

1 배경 : 현안 및 문제점

o 디지털 환경에서 누구나 쉽게 창작할 수 있게되면서 창작의 방식과 개념이 달라짐.
o 디지털 환경은 저작물에 대한 쉬운 접근 및 이용 제공
o 기존 저작권 제도는 비영리적 창작 및 접근에 장벽이 되고 있으며,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o 저작권 제도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나 국내 저작권법은 새로운 권리의 신설, 보호대상의 확대, 저작권 집행 강화 등 권리가 강화되는 일방향적으로 개정됨.

2 목표 : 개선방향

o 권리자 편향적인 저작권 제도의 균형 회복 필요.
o 공적 지원을 받은 저작물의 자유 이용, 비영리적 이용에 대한 공정이용 인정 등 배타적 권리의 제한 확대 필요.
o 장기적으로 저작권 등록제 등 저작권 제도의 개혁 필요.
o 공개 라이선스 운동이나 이에 기반한 사업 모델 개발 등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자발적 흐름 활성화.
o 문화 창작자에 대한 공적 지원 확대.

3 방법 : 제도 개선 및 법 개정

o 이용자의 비영리적 이용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저작권법」 개정 필요
o 한미 FTA 폐기
o 저작권 강화에 편향된 국제조약이 이용자의 권리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국제적인 차원의 노력 필요.
o 문화 노동자에 대한 복지 제도 등 창작자에 대한 공적 지원제도 도입

11 시청자 주권의 현실화 방안

1 배경 : 현안 및 문제점

o 방송법은 공민영, 유무료 구분없이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고, 방송결과는 시청자이익에 합치해야 함.

o 전통적으로 방송의 주인은 시청자, 시청자주권 보장 필요성에 동의. 시청자권익보호 제도 도입. 정작 방송법에는 시청자에 대한 용어(개념) 정의 없음.

o 미디어환경이 다매체 다채널화 되면서 시청자주권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 제기. 현재 시청자는 수용자 이용자 소비자로, 주권은 복지 후생 개념 등으로 다양하게 혼용.

o 시청자주권 실현을 위해 도입된 시청자권익보호 제도들 형식적 운영되고 있어 문제.

o 방송정책 도입과정에서도 시청자주권 축소 우려 증가. 그러나 다매체 다채널시대, 오히려 시청자권익 침해 우려 커 시청자주권 실현 필요성 커지고 있음.

2 목표 : 개선방향

o 다매체 다채널 환경에서도 방송이념은 달라지지 않음. 수신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달라지는 방송영역 변화와 방송 그 자체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o 시청자주권 실현을 위해서는 공공재인 방송의 실질적 주권자인 시청자 및 시청자권리에 대한 용어정의 법에 명시되어야 함.

o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청자권익보호 제도 분석을 통해 시청자주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 제도로 거듭나기 위한 개선안 제시.

3 방법 : 제도 개선 및 법 개정

o 방송법에 제2조에 시청자/시청자주권 용어 정의 법에 명시.

o 제35조 시청자불만처리 기능 개선.

- 방송심의기구 최소심의 전제로 시청자불만, 선방송사처리 후규제 기관원칙 명시. 시청자불만수렴 2차기구로 제안 및 시청자불만처리 결과에 대한 시청자이의 제기 추가 필요. 전제로 당사자자전치주의도입으로 자율심의 및 시청자피드백 강화해야 함. 규제기구는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규제권한 명시.

o 제6장 시청자권익보호 제도 개정

- [신설] 시청자권익보호 전담기구 신설로 시청자권익보호 제도들 간 유기적 운영 시스템 구축 제안: 시청자위원회 상임화 및 활동지원. 시청자평가원, 시청자평가/참여프로그램, 시청자민원(피해구제 등) 등 관련 업무전담.
- [신설] 시청자평가원의 권한과 직무 명기. 시청자위원회의 비상임 시스템 한계 극복위해 시청자위원회와 시청자평가원 활동 연계. 시청자평가원 상임활동 제안. 시청자의견, 불만 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옴부즈맨 역할 부여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뿐만 아니라 유료방송도 시청자권익보호 위한 시청자위원회 두어야
- [제87조] 시청자위원회 사장선임구조 개선. 방통위(규제기구)에 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가칭) 구성. 방송사 사장 아닌 방송방통위원장(규제기구 장)이 시청자위원 임명하도록 제도개선. 방송법에 명시된 시청자권익 활동 보장. 또한 위원회 권한과 직무에 시청자불만처리 과정 감독 심의업무 포함해 자율심의 강화해야.
- 시청자평가프로그램. 방송사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위해 제작자 권한 명시. 프로그램 제작관련 기금지원 등

o 방송통신발전기금 제38조 기금용도에서 시청자단체 활동지원 삭제. 시청자권익증진 사업에 대한 용도 정확히 명시해야 함. 현행 연구위탁 사업 형태의 시청자단체 활동지원은 애초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발전기금용도에 시청자단체활동 지원 회복 및 다양한 단체 활동 지원하는 시스템 필요.

o 기타

12 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확대 방향

1 배경 : 현안 및 문제점

o 최근 장애인 방송정책이 개선되고, 정책 시행을 위한 지침이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있음. 특히, 재난방송이나 방송통신 융합에서 이러한 경향이 큼
o 방송 제작에 있어서도 물리적인 접근은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이 어려움 실정임. 더욱이 장애인 특성에 맞는 장비가 많지 않아 장애인의 방송창작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o 언론의 경우 많이 열려있는 것을 사실이나 산업적인 측면에 가리어 상대적으로 장애인의 문제가 묻히고 있음

2 목표 : 개선방향

o 수화 및 화면해설 비율 현재보다 2배 이상 증가 필요
o 장애인의 DMB 및 재난 방송, 방송통신 융합 매체 접근환경 마련
o 온라인언론 업데이트 가능한 장애인 콘텐츠 보유 또는 장애인 기사 메인 10% 메인 기사로 할당
o 미디어센터 공간 장애인 접근권과 활성화
o 장애인 사용 가능한 장비 개발·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
o 장애인미디어지원센터 설립

3 방법 : 제도 개선 및 법 개정

o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DMB 기술 규격의 변경
o 방송통신 융합 매체 접근권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13 방송통신 규제기구 개편 방향

1 배경 : 현안 및 문제점

o 정권에 종속한 위원회와 위원장의 독단
o 언론자유와 독립을 훼손하고 방송언론을 지배
o 공익보다 산업 가치를 중시
o 무료방송보다 유료방송 진흥에 복무
o 종합편성채널 선정과 특혜조치
o 정보통신 산업 정책 부재
o IT 업무 분할에 따른 불편함과 복잡성, 비효율 발생

2 목표 : 개선방향

o 정권에 독립적인 합의제 방송위원회 완성
o 정보통신산업(ITC) 정책 통합규제
o 공공성과 지역성 확대
o 위원회 내 견제와 균형

3 방법 : 제도 개선 및 법 개정

o 정보통신 부문은 '정보미디어부', 방송부문 '방송위원회'로 분리
o 방송위원은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선출
o 상임위원의 정책 발의권 및 의사 결정 저항권 보장
o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o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 지위 부여

14 언론중재위원회 개편 방향

1 배경 : 현안 및 문제점

o 언중위는 언론분쟁사건을 처리한다는 차원에서는 피해구제기관이나
o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피해구제기관이 되지 못하고 있다.
o 언론사에 편향된 문제 해결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o 중재위원의 법조계과 언론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o 피해자를 위한 구제기관의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2 목표 : 개선방향

o 실제제적인 피해구제방안 마련을 위해 언중위의 역할 개선
o 피해자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처리방법 개선
o 객관성,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직
o 언론사에 편향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 개편
o 현 위원회를 언론분쟁조정을 주 역할로 하는 조직개편

3 방법 : 제도 개선 및 법 개정

o 언론중재위원회를 언론분쟁조정위원회로 개칭
o 조정위원도 중재를 위한 법조계 인사 중심에서 합리적 조정 위해 피해자 의견 반영 가능한 시민단체 추천 조정위원 할당.
o 조정부와 별도의 중재센터 운영
o 현 각 중재부의 장은 법조인이 맡아야 한다는 규정 개정
o 조정부장은 각 조정부 소속 5인의 조정위원 중에서 호선

15 방송심의 개선 방안

1 배경 : 현안 및 문제점

o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법'에 근거 민간독립기구로 합의제 위원회제를 표방하고 있으나 2010년 2월 법원은 방심위가 행정기구라는 판결을 내렸음

o 조직의 구조와 재정뿐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선임의 방식, 그리고 심의결과가 행정처분적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

o 방송심의는 공정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정치적 편파심의로 공적기구로서의 신뢰를 상실

o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적 구조적 문제를 평가하여 공적기구로서의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정립되어야하는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2 목표 : 개선방향

o 방송의 질적 기준(standards)에 개입하는 활동으로서의 '심의'는 최소화되어야 함. 그리고 사전심의가 아닌 사후 개입으로서 존재해야 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목적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음.

o '심의'가 규제가 아닌 자율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

o 방송에서의 '심의'는 상업적 표현물에 대한 사회적 관리로서 필요한 요소이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심의행정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함.

3 방법 : 제도 개선 및 법 개정

o 시청자의 불만처리와 방송심의 체계화

– '시청자불만'에 대한 정의, 민원처리규정에 대한 개정 :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민원처리규정과 심의처리규정을 개정하여 헌법적 원리에 맞게 예를 들어 그 심의신청의 사유를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음. 또한 불공정 방송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때에만 심의를 해야 함.

- 민원시스템의 체계화 : 시청자민원의 1차 창구는 방송사가 담당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사에서 처리하지 않거나 시청자가 방송사의 처리방식에 불만이 있을 경우 2차 창구로써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o 방송사의 자율심의강화 : 방송사자율규제의 기준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행정적 강제성을 가질 수 있는 법안 개정 필요

o 보도프로그램과 '공정성' 심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이후 현재의 심의 중에서 방송심의규정 제9조제2항 상의 '공정성' 심의는 '공정성' 심의규정 폐지가 아닌 '공정성' 규정의 적용을 보도프로그램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함.

o 심의규정의 입법화 : 현재 심의규정이 위원회 차원의 자의적 개정 및 제정으로 인해 방송법보다 우위의 심의규정들이 행정력을 과시하고 있으나 방통심의위 심의의 자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요한 심의규제 내용은 방송법에서 직접 규정해야 함.

16 통신심의 개선 방안

1 배경 : 현안 및 문제점

o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대통령과 여당측 위원이 6인, 야당측 위원이 3인으로 구성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이라는 의사·의결정족수 규정에 따라 야당측 위원들의 의견이 무시되고 대통령과 여당측 위원 6인의 의견에 따라 운영된다는 우려와 불만이 팽배한 상태임

o 방송과 통신은 그 성격이 상이함에도 하나의 조직에서 심의하다 보니 통신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방송에 대한 엄격한 심의기준이 통신영역에 대한 심의시에도 투영되는 경향이 있음

o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이후 통신심의 건수는 증가세에 있는데 심의건수 대비 시정요구비율이 2008년 50.7%, 2009년 72.4%, 2010년 89.8%, 2011년 약 93.1%로 대폭 증가하고 있어 졸속심의 우려가 현실화되었고 사실상 통신심의절차가 규제를 위한 요식절차화되었음

o 현행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에 의한 잠정적 판단에 의해 통제가 자의적 졸속과다심의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통신심의영역에서 위축효과를 야기하는 부당한 통제로 실질적 검열이 성행하고 있음

o 현행 통신심의의 근거법률에 위헌성이 농후하고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기준은 70-80년대 심의기준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법률의 한계를 뛰어넘어 전체적으로 위헌성이 다분함

o 통신심의의 대상인 불법정보, 권리침해정보, 청소년유해정보, 일반유해정보 등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2 목표 : 개선방향

o 자의적 졸속과다심의, 정보부족으로 인한 역선택 우려(위축효과), 잠정적 판단에 따른 부당한 통제가 통신심의를 실질적 검열로 작동하게 할 우려가 다분하므로 법규의 명확화를 통한 추상적 예측가능성 확보, 심의정보의 공개를 통한 심의의 투명성·구체적 예측가능성 고양, 즉각적 사법심사가 필요함

o 즉각적 사법심사가 실현될 경우 필요성이 반감될 것이지만, 사법심사절차의 유형에 따라 여전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방식이 갖는 한계를 인식하고 위원들의 정치적 성향(편향)을 제거할 수 있는 묘안을 마련할 필요있음

o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가 철폐되면 경찰청, 국정원,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식약청, 특허청, 관세청 등 행정기관에 의한 '협조요청'에 의한 정보유통의 규제가 오히려 활발해 질 수 있고 이는 또다른 행정심의의 부활로 이어질 수 있고, 대형 포털사 등 ISP · OSP에 의한 사적검열의 위험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이런 점을 고려한 종합적인 통신심의대안 마련이 필요함

③ 방법 : 제도 개선 및 법 개정

- o 통신심의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일반유해정보의 경우 현행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적 합의(입법)에 따라 일부 심의대상으로 편입할 수 있고, 불법정보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o 불법정보, 청소년유해정보, 권리침해정보는 그 성격이 다른데도 하나의 심의절차를 통해 규제해왔던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고, 청소년유해정보는 청소년보호위원회나 다른 기관에 의해 청소년유해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전문적으로 하도록 할 필요하고 있고, 권리침해정보의 경우 대립당사자가 존재하므로 쌍방의 입장이 적절하게 표현되고 조화될 수 있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으므로 결국 정보의 유통규제 영역은 불법정보 중 극히 일부에 한정되어야 함
- o 불법정보의 경우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에 부적절한 정보도 있고 불필요하거나 부당한 제한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정보들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긴급한 유통규제가 필요한 정보에 한해 즉각적인 사법심사 개시를 전제로 제한적인 유통제한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o 통신을 매개로 한 정보유통에 대해 행정심의에서 사법심사로의 전환은 필요하지만 기존 사법절차는 즉시성 측면에서 긴급한 유통규제의 필요를 충족하기 어렵고 효율성, 손쉬운 이용가능성 측면에서 현행 통신심의제도보다 불리하므로 통신심의를 대체할 새로운 사법절차의 신설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마약류유통정보, 작업대출정보, 문서위조광고, 명백한 국가기밀누설정보, 장기매매광고 등 긴급한 유통규제가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이를 대체할 행정기관의 판단으로 ISP, 게시판관리 · 운영자 등에게 일반 공중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하는 임시접속차단명령을 한 다음 이 명령과 동시에 법원에 불법정보심판을 구하는 방식을 제안함(제1안)
- o 임시접속차단명령을 위한 판단을 행정권에 맡기게 되면 사실상 행정심의가 존속하게 되고 현행 통신심의가 부활할 여지도 있으므로 아예 중앙행정기관의 장, 일반이용자, 자율심의기구 등이 바로 법원에 특정 정보의 유통을 막아달라는 심판을 청구하고 그 심판절차에서 해당 재판부가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해당정보의 임시유통차단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음(제2안)

17 지상파방송제도의 발전 방향

1 배경 : 현안 및 문제점

o 지상파방송은 지상파 방송의 책임성이나 공적 역할을 둘러싼 전통적인 규제의 틀이 여전히 존재하고, 거의 대부분의 재원을 광고나 상업적 행위에서 마련해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의 압력이 큰 상황에서 다른 유료방송채널들과의 경쟁까지 벌여야 하는 이중 삼중의 문제들에 직면해 있음

o 시민사회의 역량이 커지고 정치적인 민주화와 정당의 재편, 다양한 매체의 등장과 미디어계의 자유화, 전 세계적인 소비자본주의의 확장과 수용자의 변화 등의 요인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지상파 방송을 둘러싼 복잡한 현실이 구성되고 있음

o 또 약화되어 가던 정부나 정당의 정치적 영향력이 다시 강력하게 부활할 조짐을 보이는 지난 몇 년 간의 상황을 돌아보면, 지상파 방송에 가해지는 정치, 경제, 문화적 영향력은 지상파 방송 제도와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킴

o 현재까지 지상파 방송 정책과 제도는 과거의 틀에 머물고 있고 매우 소극적인 정책 프레임 즉,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 방송의 공정성, 공통 문화의 제공, 과도한 상업 프로그램의 규제 등과 같은 소극적 프레임에 갇혀 있음

o 지상파 방송 정책과 제도는 여전히 서울 중심적이며 담론은 극히 제한적임. 거대한 산업화와 상업화, 미디어 기업 간의 합종연횡, 정치적 권력과의 유착, 무한경쟁의 상황은 오히려 지상파 방송을 중심으로 한 공공서비스방송체계의 재구축을 요청하고 있음

2 목표 : 개선방향

o 지상파방송을 둘러싼 현재의 부정적인 힘과 대립하는 사회문화적 공공권(지대)의 재창조, 보다 적극적이고 전환적인 관점에서 KBS, EBS, MBC의 새로운 과제와 역할의 설정, 지역성과 사회의 여러 계층의 대표성을 확장하는 공공서비스방송(PSB)의 새로운 제도적 틀, SBS의 공공적 역할의 재설정,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상파 방송의 규제체제와 각 방송사의 지배구조, 재원구조의 다양화, 공공서비스방송을 포함한 확장적 공공서비스미디어(public service media system) 정책 등의 여러 문제들이 새로운 지상파 방송 제도와 정책의 틀 속에서 제안되고 토론될 수 있어야 함.

3 방법 : 제도 개선 및 법 개정

- o 디지털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공공 미디어가 여전히 더 중대한 위치를 차지하고 보다 광범위한 공적 역할의 수행자가 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구축해야 함
- o 영국에서 주로 채택되고 있는 공공서비스방송체계(public service broadcasting system)의 도입과 이에 따른 지상파 방송 영역의 공공서비스방송체계화 및 이에 부합하는 공공서비스방송체계 규제와 정책을 재조정해야 함
- o 공공서비스방송체계 내에 존재하는 채널이 각각 차별화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공적 임무의 차별적 적용이 필요함
- o 공공서비스미디어(public service media)의 확장을 추구하여, 케이블, 위성, IPTV, 인터넷과 같은 유료 플랫폼과 미디어에 의존하는 상황을 고려한 방송, 인터넷, 케이블을 축으로 한 공공서비스미디어 정책을 수립해야 함
- o 행정구역이 아닌 생활권에 기초한 지역 지상파 방송 권역의 재설정과 이에 기초한 공영방송 지역국들의 광대역화, 지역 네트워크의 재구조화, 지역 공공서비스방송체계의 대안적 구축 방안들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과 연구 및 대안을 제시해야 함
- o KBS, MBC, EBS, SBS, 지역민방 등 공공서비스방송채널들의 콘텐츠나 이들의 외부에 존재하는 창의적인 콘텐츠들의 공급 기지를 만들어야 함
- o 지상파 방송을 중심으로 한 공공서비스방송체계 정책은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및 구조 재편의 문제와 연결됨.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는 망 영역, 플랫폼/미디어 영역, 콘텐츠 영역의 삼분화에 기초한 정책 영역의 명확한 재설정과 유기적 정책 기획과 실행이라는 방향으로 재구조화되어야 하며, 플랫폼과 미디어 영역은 다시 공공서비스미디어 부문, 상업미디어 부문, 지역 미디어 부문, 특수 미디어 부문, 사회 미디어 부문과 같은 세부 정책 부문들로 분화되어 해당 부문의 전문적 정책 생산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함.
- o 전국적이거나 지역적인 단위에서 성, 인종, 계급, 출신 지역, 정치적 성향, 경제적 차이 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접근하고 수용할 수 있는 미디어(포괄성과 보편성), 상업 미디어가 제공하지 못하지만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질 높은 프로그램들의 생산과 이를 지지하는 조직 문화(혁신성), 미디어 운영 집단이 과도한 대의성을 가지기 보다 다양한 사회 집단들의 직접적인 참여 장치와 제도의 마련(민주성), 다양한 지역 정치와 문화의 창조(지역성)와 같은 지상파방송 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창조적으로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만들어야 함
- o 이를 위해 후속연구를 통해 공공서비스방송체계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들과 이에 따른 법개정 작업의 근거들을 마련해야 함

18 지상파방송 제작자율성 확대 방향

1 배경 : 현안 및 문제점

o 이명박 정부 4년간 지상파 방송은 사장 축출과 특보사장 임명, 정권 비판 프로그램 폐지와 시사고발 프로그램 위축으로 사실상 관제 홍보 방송화 되었음

o 검찰의 PD수첩 탄압과 추적 60분과 PD수첩의 4대강편 불방과 천안함을 통한 남북 위기상황 조장, 4대강 홍보와 G20 관제홍보 등에 이어 김제동, 김미화, 김어준 등 쇼셜테이너라 일컬어지는 방송 MC들에 대한 축출까지 진행되었음.

o 방송 독립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싸워온 언론인들과 정권 비판적 언론인들은 파면과 해고 등 징계로 통제하면서 언론사 조직운영은 명령과 지시로 제작 자율성은 고사되었음.

o 정치권력과 자본권력 등 내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취재 및 제작자율성 보장을 위해 법으로 명시된 '편성규약' 이 있으나 무력화되었고, 단체협약과 공정방송협의회 등 내적 장치 또한 미흡해 국민들의 알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음.

o 언론사 조직운영의 근간인 민주적 운영과 투명성, 자율성은 사라지고 명령과 지시 체제로 실제 KBS 새노조는 60.9%, MBC 노조는 93.2%가 제작자율성 침해를 경험했다고 함.

2 목표 : 개선방향

o 제작 자율성을 보장한 내부의 장치들 중 KBS는 편성규약과 공정방송협의회가 운영되고 있고, MBC는 공방협이 운영되고 있음. SBS는 편성규약에 분쟁해결 방안까지 마련되어있음.

o 신문사와 방송사 포함 내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작자율성 강화 조치들 중 가장 현실성 있게 잘 마련된 제도들을 다른 방송사들도 단체협약으로 확대 적용시키고자 함.

o 방송제작 실무자들을 위해 마련된 방송법 4조 4항 '편성규약' 을 선언적 규약이 아니라 갈등 분쟁시 조정 장치와 이행조치가 없어 선언적 의미로만 그치고 있어 독일과 오스트리아처럼 실질적 제도로 개정해야 함.

o 내적 자율성의 핵심 견제장치인 본부장과 국장 등 책임직 간부에

대한 인사에 제작 실무자들의 참여가 대폭 확대 강화되어야 함.

3 방법 : 제도 개선 및 법 개정

- o 개정될 편성규약은 '방송제작 및 편성규약'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하며,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과 '조정위원회'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시 벌칙 조항의 보완이 필요함.
- o '조정위원회 구성'은 제작 책임자를 대표해 회사측 2명, 제작실무자를 대표한 조합측 2명, 시청자위원회 조정위원 3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반드시 시청자위원 측에서 맡아야 함.
- o 본부장 신임 투표 요건을 완화하고 보도국장, 제작국장, 라디오국장, 편성국장 등 책임 국장에 대한 임명 동의제나 국장 직선제를 도입해야 함.
- o 중간평가제도를 강화하고, 제작 방해 목적의 인사발령에 브레이크를 걸수 있는 이의제기와 제발방지를 명시하는 인사규정을 신설해야 함. o각종 제도적 장치는 최소한의 장치일 뿐 표현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받고 지켜질 수 있는 구성원 스스로의 '언론인'이라는 자각과 건강한 조직문화가 우선되어야 함.

19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향

1 배경 : 현안 및 문제점

o 공영방송 이사진과 경영진의 선정 과정에 특정 정치세력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로 인한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란 지속
o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 및 임명 등의 형식적 절차의 불일치 발생
o 공영방송 이사장 및 사장의 불투명한 선출 과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발생
o 공영방송 이사회의 형식적인 운영으로 인한 관리 및 감독 기능의 상실

2 목표 : 개선방향

o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정치적 독립성 및 합리적 운영
o 공영방송 이사진의 선임방법, 구성 및 운영방법, 자격요건 개선
o 공영방송 경영진 선임 과정의 투명화(사장추천위원회 신설)
o 공영방송 이사장 및 사장 후보자의 국회 검증
o 공영방송 이사회의 실질적인 공영방송 관리 및 감독권 강화

3 방법 : 제도 개선 및 법 개정

o 방송법 제46조(KBS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제48조(KBS 이사의 결격사유) 조항 개정, 방송법에 KBS이사회 사무처 및 이사와 임직원의 직무상 의무 조항 신설
o 방문진법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개정
o 교육방송법 제9조(임원),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제15조(이사 및 임직원의 직무상 의무) 조항 개정

20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 개선 방향

1 배경 : 현안 및 문제점

o 공영방송의 이상은 공적 규제감독, 공적 서비스, 공적 재원 등 삼위일체에 기반한 방송제도. 공적 감독통제시스템은 늘 정치권력에 종속되어 왔고, 공적 서비스는 상업적 서비스로 전락

o 공영방송 KBS 이사회는 KBS 경영에 관한 법적 최고의결기관이지만 집행구조가 없는 비상임 체계로 실질적인 제 기능을 담보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 노정. 이사회는 KBS 경영, 편성, 여론 등에 대해 자체적인 조사.평가 능력을 갖추지 못함. 재정 투명성 역시 감사원 감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담보하기 어려움. 수신료 수혜 당사자가 수신료 인상안을 제시하는 구조로는 똑같은 인상안을 내놔도 구조적.문화적 저항을 피하기 어려움

o 이사회의 법적 지위와 현실 간의 괴리 탓에 국가(정치권력)는 공영방송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고, 정부가 의도하는 경영 및 편성. 제작(관제방송)을 수행할 수 있게 됨

o 우리 나라 방송질서는 서울 중앙집중적 방송구도 견지, 지역성, 다양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

2 목표 : 개선방향

o 공공의 물적 토대를 갖춤과 동시에 민주적 국가화 및 민주적 정치권력을 만들어가는 정치로서의 사회화 기획 필요. 현 시점에서 미디어 영역에서 사회화의 과제는 지상파방송 디지털 전환과 무료디지털다채널서비스(MMS/Korea-View) 시행, 지상파방송의 공공서비스방송으로의 재편, 무료보편적 로컬미디어 구축, 공공재로서의 전파의 공공적 운용과 민주적 수신료 산정 제도 구축 등

o 수신료제도의 개선방안 중 지역 분권적 모델을 도입할 경우 현행 공영방송제도를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잠재력 동반

o 무료보편적 로컬미디어로의 성격 규정과 규제/진흥 정책의 수립

③ 방법 : 제도 개선 및 법 개정

- o 방송의 공적 책무를 수행할 공공서비스방송의 발전과 공영방송의 재원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신료위원회 설치
- o 수신료위원회의 수신료 산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재원 운용을 관리. 감독, 공공 재원의 안정성과 투명성, 나아가 방송의 독립성 보장
- o 수신료위원회는 규제기구가 민주적인 체계와 운영이 이루어진다면 현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체하는 규제기구 산하에 두되 독립적인 운영 보장
- o 수신료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16인, 국민의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13인, 전국 단위 부문을 대표하는 10인 등 39인으로 구성

21 EBS 공적 책무 강화 방향

1 배경 : 현안 및 문제점

o 교육문화 전문 공영방송으로서 EBS는 타 방송사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유아·어린이 프로그램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등에서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왔으며 수능방송 등도 공익적 차원에서 높은 성과를 내고 있음.

o EBS의 지배구조와 재원구조는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지위에 걸맞지 않는 종속적이고 기형적인 구조로 되어 있음.

o EBS 사장 및 이사회 선임의 정치적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고, 수신료를 비롯한 공적재원의 빈곤과 정부보조금의 확대 그리고 갈수록 상업적 재원이 확대되는 재원구조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본질적으로 위협하고 있음.

2 목표 : 개선방향

o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문화를 전문으로 하는 공영방송으로 서의 EBS의 정체성은 아직 확고하지 못하며 수능, 과외방송이라는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문화 전문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이 필요함.

o 현재 EBS의 이사회와 사장 선임구조는 KBS와 MBC에 비해 모호할뿐만 아니라 정부의 더욱 강력한 통제 하에 있음. 공영방송의 위상정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방송이 특정 정치권력이나 자본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지배구조를 정립하는 것임.

o EBS의 비정상적인 재원구조는 공적재원의 빈곤과 상업적 재원 활용의 제한으로 진흥과 규제 모두에 걸쳐 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견제 속에 사실상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 수행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재원구조의 정상화가 필요함

3 방법 : 제도 개선 및 법 개정

- o 국민의 교육권리를 보장한 헌법 제31조를 근간으로 하여,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교육권리를 구현하는 국가기간 교육방송으로서 EBS의 설립목적(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 1조)을 재개념화 할 필요가 있음.
- o EBS의 지배구조는 정치적 대표성, 다양한 사회주체의 대표성을 강화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공영방송 이사추천위원회 등의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함
- o 수신료와 관련하여 KBS 단독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 법조항을 개정하고, 수신료 산정, 관리·감독 및 배분을 결정할 '수신료산정위원회'와 같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함.
- o EBS의 왜곡된 재원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공공재원의 확대는 공공서비스 방송에 필요한 공적재원의 확보 차원에서 새롭게 논의될 필요가 있음.
- o 지식과 문화, 시사를 아우르는 교육방송으로 진전되기 위해서는 허가증 상의 '교육에 한정된 뉴스' 항목을 삭제하고 100분의 60 이외의 시간에는 교육, 복지, 노동, 환경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 대한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제작, 편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문화전문 공영방송으로서 타 지상파와 차별화되는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도록 해야 함.

22 SBS 지배구조 개혁 방향 : 지주회사 중심으로

1 배경 : 현안 및 문제점

o 소유와 경영의 분리와 전문 책임경영 구축이라는 목표로 지난 2008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SBS가 지상파 방송 서비스의 공익성 기능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사실상 방송법을 무력화 시키고 사주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지배체제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o 현재 방송사 1인 소유지분 40%, 지주회사 지배 규제나 사장 선임에 대한 제한이 전무한 민영방송은 책임경영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다. 이는 완벽한 1인 지배체제에서 강력한 인적 통제가 이뤄지고 있으며 방송의 공공성을 구현할 수 있는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경영이 실종된 상태다. 또한 지주회사 체제 SBS 수익 구조에 대한 평가에서도 제기된 바 있는 이른바 '터널링' 은 방송이 사주의 이윤을 추구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2 목표 : 개선방향

o 지상파, 종편, 보도 PP는 지주회사의 지분 소유를 금지함으로써 지주회사를 통해 방송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면서 이윤만 추구하는 행태를 방지한다.

o 날치기 미디어법안에 기초한 40%의 소유지분을 낮춰 특정 1인에 대한 방송사 지배를 방지해야 한다. 지상파, 종편, 보도 PP의 1인 지배를 금지해 독립경영과 방송 공공성, 안정적 수익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o 지상파, 종편, 보도 PP는 전문 경영인에 의한 독립 경영 보장을 법에 명시하고 방송법상의 지배주주 승인 규정을 폐지해 특정 주주의 방송사 지배 개념을 폐기해야 한다.

3 방법 : 제도 개선 및 법 개정

o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 등)개정 –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는 지상파, 종편, 보도 PP를 소유할 수 없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방송을 언론자유 실현을 위한 '제도적 보장' 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구체적인 실현 방법과 관련해서는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 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공익적 필요성만 분명하다면 합헌이라고 볼 것임.

o 지상파, 종편, 보도 PP의 1인 지분 제한을 20%로 개정하고 사장 선임에 대한 규정을 시행령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주, 종사자, 시청자 등 각 분야의 대표들로 위원을 선임하고 추천된 사장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다.

23 지역방송 정책 방향

1 배경 : 현안 및 문제점

o 방송이 추구해야 할 주요한 가치이자 목표로서 지역성이 제시되었음에도 이를 구현할 실질적 주체인 지역방송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음

o 지역성이 방송법 등을 통해 거론은 되어 있으나 방송의 주요 목적으로 승화되지 못하고 공익성의 한 항목으로 주변화 되어 있음

o 우리나라 방송법에 명시된 지역방송 관련 조항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지역성 구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 할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함

2 목표 : 개선방향

o 지역방송이 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족 기능과 지역민의 지역 중심 사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긴요한 과제임. 이에 따라 헌법에 “우리나라는 지방분권국가”라는 내용을 명시해야 함.

o 우리 나라 방송법상의 ‘지역방송’ 규정에서 ‘지역’을 서울의 반대 개념이자 변방에 해당하는 ‘지방’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단위로서 ‘지역’으로 정립해야 함. 현재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된 ‘지역방송’의 정의를 방송법으로 상향입법 해야 함.

o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 그로 인한 자족형 지역 사회의 미비와 중앙 중심적 사고의 팽배라는 지극히 한국적 현실을 감안해 정책적 개입을 통한 지역방송의 제자리 찾기가 되어야 함.

3 방법 : 제도 개선 및 법 개정

o ‘지역방송’에 관한 정의를 삶의 단위에 기초한 개념으로 바로 잡고 방송법에 상향 입법해야 함.

o 중앙 지상파사와의 합리적인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구축

o 중앙 지상파와의 결합 판매를 통한 광고지원 및 전파료 배분의 합리적 개선

o 지역민방의 소유와 경영 분리 제도화 및 과도한 주주배당 규제

o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등의 실질적 위상 회복을 통한 지역방송 지원 정책 제도화(자체 제작비율 상향 조정, 외주제작물 인정, 지역방송 프로그램의 주시청시간대 편성 의무화, MMS 시행에 따른 가용 채널의 지역 프로그램 편성, 전국 방송 편성 비율 설정, 지역방송발전기금 조성 및 지원, 디지털 전환비용 지원,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유예 및 면제,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센터 설립 등)

24 신문산업 지원 방안

1 배경 : 현안 및 문제점

o 신문산업은 디지털 미디어시대에도 여전히 주요 뉴스를 공급하는 1차 콘텐츠 생산기지로서 지상파,케이블,IPTV, 모바일,인터넷기반 뉴미디어등과 함께 균형발전이 모색되야 한다. 신문산업의 위기는 방송,인터넷,통신 전반에 흐르는 콘텐츠의 질과 양적인 면에서 빈곤을 불러올 수 있으며 이는 미국 월가의 시위에서 목격하듯 대의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진다.

o 국내 신문사의 콘텐츠 생산인력(1만8000여명)은 거대 장치산업인 방송사 인력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초과하고 있으나 공적인 지원은 9분1 수준에 불과하며 지속적인 방송광고 규제완화등으로 상업적 기반이 급격히 잠식되고 있다.

o 이에 따라, 미디어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방송사등 거대 미디어산업에 밀려 점차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중소 신문을 비롯해 풀뿌리 지역언론, 인터넷 언론, 독립 디지털매체(블로거) 등 대안매체에 대한 공적지원과 이를 통한 미디어의 균형발전이 시급하다.

2 목표 : 개선방향

o 신문 콘텐츠 발전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방송,인터넷,통신에 일정한 미디어균형발전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o 신문산업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은 외면한채 정부에 예속돼 정치적편향에 대한 논란을 낳으며 소규모 생색내기식 지원에 머물고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대한 전면적인 재편이 추진돼야 한다.

o 유럽의 경우 신문진흥기구는 크게 오스트리아처럼 정부로부터 독립한 기구가 신문진흥의 전권을 쥐는 모델과 프랑스나 네덜란드처럼 정부가 신문자금 집행의 책임을 맡되 사업의 지원방향과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시행령이나 사회계약을 통해 도출하는 모델로 나뉜다. 하지만 어느 경우나 정부가 직접 예산, 인사권을 쥐고 있는 신문위

원회에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지원방향 등 신문발전기금의 운영과 관리의 전권을 맡기는 한국과 같은 모델은 없다.

3 방법 : 제도 개선 및 법 개정

- o 언론진흥재단 출범 이후 끊이지 않은 정치적 시비를 감안할 때 향후 신문발전기금을 포함한 미디어균형발전기금을 집행할 기구는 오스트리아식의 합의제 독립 위원회를 모델로 정부는 실무적 지원만을 맡는 방향으로 개편이 바람직해 보인다.
- o 미디어균형발전위는 문광부 산하기관이 아니라 총리실 산하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현재의 언론진흥재단은 미디어균형발전위 산하 사무처로 개편이 불가피하다.
- o 미디어균형발전위가 종래 주로 신문만 지원하던 언론진흥재단과 달리 신문을 포함해 풀뿌리 지역언론, 인터넷 언론, 독립 디지털매체(블로거) 등 대안매체 전반에 대한 지원 기능을 담당하고 기금 조성원도 신문광고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방송,인터넷,통신 등으로 영역이 확대되야 하기 때문이다.
- o 미디어균형발전위원은 여야 동수 추천 위원 6명과 광역자치단체장 추천 위원 5명 등 1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간 호선을 통해 선출한다.
- o 이상과 같은 미디어균형발전위원회를 발족하기 위해 신문법 제4장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제5장 언론진흥기금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거나 또는 별도의 입법을 마련한다.

25 공동체(풀뿌리)방송의 제도화 방안

1 배경 : 현안 및 문제점

- o 최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시민들은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능동적 주체가 되고 있으며, 미디어 정책의 방향은 미디어를 통한 시민의 사회적 표현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 o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시민들의 참여와 접근을 보장하는 공동체라디오, 공동체 TV와 같은 방송영역을 '공동체방송(Community Broadcasting)' 이라고 규정하여 공영, 민영방송과 함께 제 3의 방송영역으로 인정하고 있음.
- o 공동체방송은 표현의 자유, 미디어에 대한 시민의 접근과 참여뿐만 아니라 미디어 다원주의, 지역성, 미디어 리터러시 등 미디어 공공성 구현에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음.
- o 현재 국내에는 공동체라디오 방송이 도입되어 있지만 낮은 출력, 공적지원 중단, 신규사업 배제, 디지털 전환을 포함한 종합적 정책부재 등 제도적으로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

2 목표 : 개선방향

- o 공동체방송의 정책을 위한 접근은 무엇보다도 공동체방송의 특성이 유지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o 현재 방송법에는 공동체라디오 방송을 지상파방송의 한 유형으로서 구분하는 등 공동체라디오방송의 가치와 의미를 명확하게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
- o 또한 공동체라디오 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정책이 부재하며, 디지털방송 시대 도래에 따른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고려와 공동체 TV에 대한 제도적 검토는 전무한 상태임.
- o 따라서 공동체방송을 공영방송·상업방송과 뚜렷하게 구별되도록 공동체방송의 체계를 정립해야 하며, 공동체방송의 의의를 살리면서 지속가능할 수 있는 다양한 진흥과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져야 함.

3 방법 : 제도 개선 및 법 개정

- o 제 3의 영역으로서 공동체방송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이에 부합한 법제도적 세부사항에 대한 개선과 제정이 필요함.

o 먼저 국내 방송체계에서 별도의 공동체방송의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 공동체방송을 제 3의 방송영역으로 규정하는 것은 공동체방송이 공영방송, 상업방송과 차별성을 갖으며, 그 역할과 운영 또한 달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o 현재 방송법에는 공동체라디오 방송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이 방송사업자의 한 유형으로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허가 관련 정책이나 규제에 있어 일반 지상파방송에 준하는 규제를 받게 될 소지가 있으며, 공동체라디오방송의 가치와 의미를 명확히 반영한 규정과 제도를 수립하는데 한계를 갖게 함.
o 공동체방송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과 함께 그간 공동체라디오 방송 운영에 있어 문제점으로 제기 되었던 출력 증강, 허가 규정, 내용규제에 대한 법률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
o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공동체방송을 위한 공적지원 방안의 마련도 필요함. 공적지원은 공동체방송의 안정적 운영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비영리적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정장치 역할을 할 수 있음. 따라서 공동체방송이 시장 경쟁 논리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공공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적지원의 틀이 마련되어져야 함.
o 공동체방송에 대한 공적지원은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제도화 되고 시스템적인 구로를 가진 형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동체방송 기금 조성과 공적기금의 관리와 집행, 공적지원 영역에 대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o 공동체라디오방송은 지역밀착형의 매체로서 지역 공동체의 이해와 가치를 담아 지역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참여하는 매체임.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동체라디오방송이 허가 되어져야 함. 그간의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운영 결과 신규허가에 대한 필요성과 수요가 확인되고 있음.
o 이를 위해서는 공동체라디오방송을 고려한 주파수 정책과 신규허가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함. 또한 라디오의 디지털 전환과정에 있어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주파수 정책이 수립되어져 할 필요가 있음.
o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TV 영역에서도 공동체 TV가 제도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현재 기존 미디어를 통한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을 통해 제한적 시민참여가 가능하지만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음. 따라서 시민들의 완전한 참여가 이뤄질 수 있는 공동체 TV 모델에 대한 제도적 검토와 실행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음.
o 이를 위해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으로 시민의 참여와 접근이 가능하도록 채널이 할당되어야 하고, 공동체 TV를 위한 시범사업과

연구를 통한 법제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함.

26 국가기간통신사 개선 방안

1 배경 : 현안 및 문제점

o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가 뉴스통신진흥법이라는 취지에 걸맞는 역할을 하는 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는 국가로부터 신문 전체에 지원되는 금액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도 소매업 영업 행위를 강화해 회원사인 신문사들과 무한 경쟁을 벌이며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또 연합뉴스는 보도전문채널을 개국하며 방송에까지 진출해 미디어 생태계를 교란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o 연합뉴스 보도의 공정성 문제는 외부 뿐만 아니라 연합뉴스 내부에서도 그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뉴스통신진흥법에 의해 국가기간통신사로 지정돼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연합뉴스가 입법 취지에 맞게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바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2 목표 : 개선방향

o 1차적으로 보도의 편향성이 개선되어야 한다. 연합뉴스의 특정 정치세력 및 자본에 대한 불공정/편파보도는 신뢰의 위기를 자초한 측면이 크다.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공정보도감시·개선기구의 실질적인 제기능화, 시민참여 모니터링 및 의견반영이 구현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구축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o 국가기간통신사에 걸맞는 위상과 자기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이는, 과도한 소매업 행위 및 보도채널 진출 등 직접시장 확대 정책에 대한 제동과 함께, 정보주권과 뉴스통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감한 투자 및 전망 제시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포털과 무가지에 대한 기사공급의 일정한 제한, 국내 및 해외 취약 취재지역에 대한 취재인력 보강 및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가기간통신사가 미디어 생태계 내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새로운 전망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3 방법 : 제도 개선 및 법 개정

- o 뉴스통신진흥법 폐지 :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중단시키고 비록 법 제정 이전 소유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최소한 뉴스통신시장을 자유경쟁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비록 연합뉴스가 자금과 인력 면에서 타 신생 뉴스통신사에 비해 압도적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시장질서가 재조정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두 번째 방안은 법을 폐지하는 동시에 현 연합뉴스의 소유구조를 해외 유수통신사들과 같이 회원제 주식회사, 조합, 또는 사단법인 형태로 개편하여 지분을 기존 신문사와 방송사에 골고루 나눠줘 공동으로 운영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문과 방송사가 연합뉴스를 제대로 된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육성하기 위한 주주로서의 책임과 의무 또한 뒷받침되어야 한다.
- o 뉴스통신진흥법 개정 : 언론시민운동진영에서는 타 뉴스통신사에게도 국가기간통신사에 지정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연합뉴스의 지속적인 자기혁신과 발전을 위하여, 방송처럼 3년 또는 5년 단위로 국가기간통신사에 대한 재허가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출하고 있다. 이럴 경우, 재허가 과정에서 권력의 눈치를 살피느라 연합뉴스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타 언론사, 특히 신문과의 상생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소매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27 디지털 전환과 국민의 기본권

1 배경 : 현안 및 문제점

o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은 디지털전환 특별법에 따라 오는 12월 31일을 기해 종료하게 됨.

o 디지털전환 정책은 기업과 정부에게 각각 디지털TV라는 새로운 시장의 형성과 주파수 경매라는 정부의 재원마련이라는 분명한 정책목표가 있는 반면 국민에게는 고화질, 고음질이라는 다소 막연한 혜택만이 부여되고 있음.

o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종료는 안테나를 이용하여 TV를 시청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공권력이 특정시점에 배타적으로 국민이 소유한 아날로그 TV와 수신설비라는 재산에 대한 사적 유용성을 제한' 하는 조치임

o 하지만 관련 법령과 정책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상의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제한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음.

2 목표 : 개선방향

o 디지털전환이라는 정부정책에 따라 재산권을 침해받게 되는 전 국민에 대해 완전 보상을 목표로 함

3 방법 : 제도 개선 및 법 개정

o 디지털 전환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 침해가 국가가 적법하게 침해할 수 있는 대상인지를 살펴보고 헌법의 조항간의 관계와 디지털전환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한이 어디에 속하는지 검토

o 헌법 제23조제3항에서와 같이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제하는 경우 행해져야 하는 정당한 보상의 의미를 파악

o 디지털전환특별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은 보상의 대상과 방법을 법률이 아닌 법 적용기관의 시행령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입법상의 문제로 인한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헌법소원청구소송을 진행함

28 700MHz 주파수 정책 방향

1 배경 : 현안 및 문제점

o 700MHz대역 방송주파수의 통신할애에 의한 통신편향 정책 문제점
- 방통위는 최근 2012년1월20일 통신에게 700MHz대역 주파수 중 상하대역 20MHz씩 분산하여 총 40MHz를 통신에게 우선 할당하기로 결의함.
- 주파수 알박기를 시도하여 추후 700MHz대역(총 108MHz 주파수폭) 모두를 통신에게 할당하려는 꼼수임.

o White Space 이용정책에 의한 방송용주파수의 난개발과 파괴 위기
- 방통위는 미국의 주파수정책을 모방하여 방송주파수대역 내에서 혼신방지를 위해 비워둔 주파수마저 무선 WiFi용으로 사용하고자 제주도테스트베드에서 실험중임.

o 자본과 상업적 정책에 의한 방송용주파수의 공익적 가치 상실 위
- 아직 미국 외 어느 나라도 700MHz주파수를 통신용으로 지정한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신할당을 서두르고 있음.

o 지상파방송의 무료보편적서비스와 공공서비스 역할 축소의 위기
- 방송용주파수는 국민에게 산소같은 존재이며 보호되어야 할 그린벨트와 같은 소중한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방송 외 전파와 통신할애로 난 개발되고 파괴될 위기임.

o 지상파 직접수신자 감소 위기 및 유료매체로의 이탈 가속화 문제
- 현재 지상파 직접수신자는 10%미만이며 정부의 각종 지상파방송 기술규제 정책으로 인해 유료매체로의 이탈이 더욱 가속화 될 위기로 몰리고 있음.

o 지상파방송 난시청해소와 수신환경 개선용 주파수 부족 발생
- 국내지형에 맞지 않고 주파수가 낭비가 심한 미국식 ATSC DTV전송방식이 난시청해소와 수신환경 개선에 한계를 느끼게 하는 주원인이며, 난시청해소와 차세대방송 추진을 위한 획기적인 기술도입 방안 없이 추진되는 주파수 회수 정책은 원천무효임.

o MMS 등 다채널방송 불허로 시청자의 디지털전환 유도 기회 상실
- MMS와 K-View 등 지상파방송 다채널서비스는 HD와 SD방송을 동시에 전송하는 기술로서 아날로그방송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인해 시청자 스스로 디지털 전환을 준비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허되고 있어 소중한 기회를 상실하고 있음.

o 주파수부족으로 차세대방송 추진지연과 세계시장 선점 기회 상실

- 차세대방송은 현재의 DTV보다 4배 이상 고품질 서비스이다. 이미 한류콘텐츠와 K-POP열풍이 세계화되고 국산 디스플레이산업 역시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파수부족으로 차세대방송 지연되거나 포기된다면 국가적 손해와 기술적 퇴보는 방통위의 통신편향 정책이 원인이 된다.

2 목표 : 개선방향

o 성공적 디지털 전환과 난시청지역 없는 디지털방송환경 구축 필요.
o 디지털전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난시청해소 및 수신환경개선 추진
o 송출에서 TV수신까지 End-to-End 무선수신환경이 궁극적 목표.
o 장차 개인형 셋톱박스시대 구현으로 언제 어디서나 수신환경 마련
o 700MHz대역 주파수, 지상파 차세대방송용으로 활용 추진
o 깨끗한 방송환경 위해 방송대역내 방송 외 전파사용 금지 추진
o 다채널방송과 차세대방송 도입으로 시청자, 방송사, 산업 혜택 추진

3 방법 : 제도 개선 및 법 개정

o 방송주파수 보호에 관한 법령 제정 및 방송법 개정 필요.
o 통신편향 및 유료방송 편향 정책 철회 및 개선 요구.
o 700MHz대역 방송주파수의 통신할당 목적 '광개토플랜' 철회.
o MMS, K-View, 3DTV, ATSC-M/H 등 시청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포괄적 허가 요구.
o (White Space 무선WiFi 이용과 무선마이크 등) 방송대역내 방송 외 전파사용 금지법안 마련 시급.
o (DTV, Radio, DMB 포함) 지상파방송의 재난. 재해방송 의무와 역할을 위한 방송법 및 전파법 개정필요.
o 차세대방송 도입을 위한 방송발전 활성화 기금 및 제도 마련
o 방송발전을 위한 예비주파수 확보와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29 방송시장 획정과 이용자 선택권

1 배경 : 현안 및 문제점

o 방송시장획정은 방송 콘텐츠, 채널, 가입자 확보 및 광고 등이 거래되는 다면적 영역 내 경쟁상황을 판단하여 적절한 규제를 수행하기 위함임.

o 2009년부터 시작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시장획정은 공정경쟁 환경의 조성이라는 목표 하에 사업자 간 이해관계의 조정에 몰두하고 있음.

o 방송시장획정은 단순한 수요/공급 대체성 여부가 아니라 새로운 방송플랫폼의 출현 이후 이루어져 온 지배적 사업자의 형성과정과 방송시장 일반이 갖는 이용자들의 독특한 지위가 고려되어 이루어져야 함.

o 대표적인 유료방송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는 케이블SO(MSO)들이며 이들로 인해 도매시장/소매시장이라는 일반적 구분이 무색해 지고 있음.

2 목표 : 개선방향

o 방송시장획정은 무엇보다 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콘텐츠와 매체, 그리고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이루어져야 함.

o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획정은 “유료방송시장획정”이며, 이로 인하여 보편적 접근이 가능해야 할 무료방송플랫폼에 대한 고려는 전무한 상태임.

o 유료 및 무료 방송플랫폼 모두 동일한 범위의 광고시장에서 경쟁하는 행위자들이며, 이 광고시장의 중요한 거래 상품은 1,900만 가구에 이르는 동일한 범위의 가입자 확보 시장임.

o 따라서 유료방송 시장획정의 최우선 과제는 가입자 확보 시장에서의 매체/플랫폼 선택권을 이용자들에게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에 있음.

3 방법 : 제도 개선 및 법 개정

- o 동일한 가입자 가구 및 광고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방송플랫폼 역시 방송시장획정안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o 현재 가입자 확보 시장에서 구분되고 있는 아날로그/디지털 방송시장은 케이블SO들이 갖는 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은폐하고 있으며, 동시에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들을 자율적 매체 선택의 주체가 아닌 “전환가구”로 개념화하고 있음. 이러한 구분은 폐기되어야 함.
- o 가입자 확보 시장의 지역 구분은 전국 단위가 아닌 77개 권역으로 하여 지배적 사업자를 구분해야 함.
- o 지상파 방송채널 재전송권 거래 시장은 이용자들의 시청관습을 고려 개별 채널이 아닌 지상파 채널 전체를 하나로 묶는 접근이 필요함.
- o 유료방송채널 거래 시장은 “장르별 유료방송채널/일반 유료방송채널”이라는 구분이 아닌 “MPP 방송채널/중소·독립 유료방송채널”이라는 구분이 타당함.

30 망중립성 정책 방향

1 배경 : 현안 및 문제점

o 2000년대 이후 트래픽 폭증과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정체에 따라 통신사는 망투자비용의 분담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망중립성 원칙이 훼손되는 사례 발생
o 국내에서도 통신사들이 특정 요금제를 사용하는 이용자에 대해 mVoIP 서비스 차단
o 2011년 12월 26일, 방통위는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나, 선언적 의미에 그침.
o 통신사들이 콘텐츠와 서비스를 자의적으로 차별할 경우, 인터넷 상의 혁신과 공정경쟁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2 목표 : 개선방향

o 인터넷 상의 혁신과 공정경쟁, 이용자의 표현의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는 유무선을 막론하고 망중립성 원칙 유지 필요
o 다만, 망혼잡 제어, 보안 등을 이유로 한 최소한의 트래픽 관리는 허용될 수 있음.
o 통신사는 네트워크 관리 관행, 성능, 이용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3 방법 : 제도 개선 및 법 개정

o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일정하게 망중립성 원칙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반경쟁 행위나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를 규제할 수 있음.
o 보다 구체적인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으며, 논의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

31 정수장학회 정비 방안

1 배경 : 현안 및 문제점

o 재단법인 정수장학회는 장학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임에도 법인의 출범 때부터 강탈에 가까운 개인 재산의 강제헌납이 있었고, 운영에 있어서도 철저히 베일에 가려진 채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좌우되는 사유화논란을 겪음.

o 2011년 11월말 정수재단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부산일보에서 정수재단으로부터 경영과 편집의 독립을 요구하던 노조 지부장이 해고되고, 관련 기사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편집국장이 대기발령 징계를 받음. 11월30일에는 무더기 징계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경영진이 신문 발행을 멈추는 사태까지 발생.

o 정수재단과 부산일보 경영진이 재단의 '실소유주'로 불리는 박근혜 의원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도록 대선 대비 사전 정지작업을 한 것으로 분석.

o 정수재단은 부산일보 주식 100%뿐만 아니라 MBC 주식 30%와 경향신문 사옥부지도 소유한 사실상 '언론 지주회사'. 정수재단 문제는 수시로 정부 차원의 민영화 방침이 흘러나오고 있는 MBC의 위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경향신문의 경영과도 관련이 있음.

o 박 의원이 집권 여당 대표역을 맡아 총선을 지휘하고, 본인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려고 하는 2012년은 정수재단 문제를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

2 방법 : 명실상부한 공익법인으로의 환골탈태

o 박 전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의 이사선임 배제 : 국정원 진실위(2005.7.22.)와 과거사위(2007.5.29.) 모두 재단 운영의 사유화 문제를 지적. 새로운 이사 선임 절차나 방법은 사회적 공론을 모을 필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에 국회 추천몫을 반영하는 사례도 참조해볼만 함.

- o 특별법 제정 : 국정원 진실위와 과거사위 조사 결과에 따른 권고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했던 한계를 벗어나 강제력을 갖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 필요. 이는 총선 이후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적극 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임.
- o 김지태 씨 유족과 정수재단 측의 화의 : 현재 정수장학회를 소유, 관리하고 있는 인사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부일장학회와 언론사를 빼앗긴 김지태 씨 유족들과 화의를 할 가능성도 있음. 유족측은 2010년 6월 국가와 정수재단을 상대로 언론사 주식 반환소송을 제기했으나 돌려받더라도 직접 소유할 뜻은 없다고 밝힘.
- o 언론사 지분과 자산의 해당 언론사 귀속 : 언론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언론사로 귀속시키는 조치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o 어떤 방식으로 정수재단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관련 언론사의 편집권과 경영권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 즉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임원 선임 절차 마련은 필수.

32 방송광고 제도 개편과 미디어 균형 발전

1 검토 배경

o 헌법재판소의 2008년 11월 지상파방송 광고시장의 경쟁체제 도입 결정 이후 미디어렙 도입 문제는 법률적 이행이 강제된 상태이지만, 극심한 내수 침체 상황 하에서 방송매체 채널의 급속한 증가는 광고재원의 부족을 야기함으로 인해 방송매체는 물론 다른 매체의 광고재원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여론다양성 확보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매체간 균형발전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o 그러나, 입법 당국은 철저히 당리당략 차원에서 지상파방송 광고시장 미디어렙 도입 문제를 접근하고 있으며, 정책 당국은 방송광고시장을 포함한 전체 방송시장의 균형발전은 도외시하고 자신들이 무모하게 정치적으로 허가낸 종편PP의 지원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상황임

o 이러한 상황하에서, 헌법재판소의 지상파방송 광고시장관련 결정 취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현재 문방위를 통과하여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미디어렙관련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정책적 과제를 살펴보고, 광고재원의 현 주소를 짚어보는 것은 매체간 균형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함

2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o 헌법재판소의 기본적 철학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

– 헌법재판소는 방송의 공공재적 특성 인정

– 방송광고 규제의 필요성 특히, 방송광고 직접 판매를 금지하는 위탁강제제도의 정당성 인정

– 방송전파를 매개수단으로 거래되고 있는 방송광고 역시 공공성과 공익성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규제가 정당화됨

o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다양성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제한적 경쟁체제를 도입’ 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결정문에 다음과 같이 예시함

– 일정한 요건, 조직, 시설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허가제

– 중소 방송국에 일정량의 방송광고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허가

– 방송광고 가격 상한선 지정

– 특정 장르·특정시청자 대상 프로그램 쿼터제 도입
– 방송사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공공성이 높은 프로그램 제작에 보조금 지급
– 공익성·공공성 훼손의 영업 시 허가 취소 등

3 2009년 이후 문방위 발의 7개 법률안의 의미

o 문방위에 제출된 7개 법률안들은 주요 항목별로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도 있었음

o 7개 법률안들이 허가제로 미디어렙을 운영하겠다는 것과 매우 강력한 광고취약매체의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충분히 수용하였다고 볼 수 있음

o 그러나, 신설될 민영미디어렙의 소유구조와 관련하여서는 1인 최대 지분을 여당 측은 40%~51%까지 허용을 하고, 야당 측은 30%를 제시하고 있음

※이는 방송편성과 광고판매의 분리라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와 배치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언론연대의 입법청원안은 10%였음

4 문방위 통과 법률(대안)의 주요 내용과 과제

o 법률안에서 모든 방송사업자는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를 판매하게 함으로써 방송편성과 광고 판매의 분리는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음

o 공영방송을 공영미디어렙에 광고판매를 위탁한 것은 공영방송에 좀 더 공적인 책임을 부과하여 시장안정을 꾀하면서 민영방송에게는 시장원리를 적용함으로써 공익성과 시장원리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한 취지로 평가됨

o 미디어렙의 소유 제한과 관련하여 광고주, 일간신문, 뉴스통신사의 소유에 규제에 관한 일련의 법적 장치들을 둠으로써 방송사 또는 미디어렙과 다른 이해관계자의 부당한 유착관계를 일정 수준 차단하겠다는 입법 취지로 해석되지만, 방송사 1인의 출자한도를 40%까지 허용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탁 강제 제도의 정당성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2010년 말 미디어렙관련 입법 과정에서 방송사 3사들이 보여준 비이성적 행위를 고려하면 향후 지상파방송사들의 미디어렙 지분

최소화 작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가능하다면 방송사의 재허가 조항에도 이 부분을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임

o 지역매체와 종교방송의 보호를 위해 설치하게 될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에서 중소방송사의 참여 비율이 너무 낮아 의결권의 실질적인 행사가 무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책적 보완이 필요함

o '최근 5년간 결합판매'의 비율을 보장하여 준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중소방송사에 대한 결합판매 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그 대안으로 '최근 5년간 매출액'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음

o 여론의 다양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중소방송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운영재원을 법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정책 과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당국과 관련업계의 지혜가 모아져야 함

5 우리 나라 광고재원의 현주소와 매체 균형발전의 중요성

o 우리 나라 광고시장은 88올림픽 이후 GDP 대비 1%를 상회하면서 급성장하였으나,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내수가 위축되면서 현재까지 2~3년을 주기로 급등락을 하며, 침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o 국내에서 광고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새로운 매체를 시장에 진입시켜도 내수가 획기적으로 진작되지 않는 한 광고시장이 추가적으로 성장할 여지는 별로 없어 보임

o 따라서, 미디어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한정된 광고재원을 어떻게 적절히 잘 배분하는가를 향후 방송과 광고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함

5.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향후 계획

미디어 관련법 제개정 연구

○ 목표

-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권리 실현을 위한 미디어 법 체계 재구성
- 공공성, 지역성, 미디어주권 실현을 위한 방송법 검토
- 민주적 규제기구와 거버넌스 구축 및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법 개정안 마련

○ 취지

- 방송 환경의 변화와 통신 산업의 발전, 플랫폼 다변화와 단말기의 혁신, 정치시스템과 미디어시스템 관계 변화, 미디어를 소비, 재생산하는 시민 미디어의 변화에 따라 미디어 생태계는 빠르게 바뀌고 있다.
- 변화는 일차적으로 생산력 발전의 바탕 위에 사적 소유에 기반한 미디어.통신자본이 주도하는 산업적 요소와 규제기구가 추진해온 미디어 사유화와 시장 독과점 정책에 좌우되고 있다. 이로부터 미디어의 물적 토대와 공공재 성격의 변화, 사업자 지위와 위상의 변화, 방송.통신사의 기업 문화와 구성원들의 변화, 미디어 이용자의 참여, 생산, 소비 패턴의 변화로 이어진다.
- 한국사회 민주주의는 지구적 자본운동의 발전에 조응해온 정치권력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왜곡, 굴절되었다. 사회 각 부문의 사유화는 공공의 물적 토대를 잠식했고, 사적 소유에 기반한 시장과 경쟁 논리가 민주주의 원리를 대체하는 경향이 강화됐다. 미디어 부문 역시 대의제미디어로서의 공영방송의 지위의 후퇴, 유료방송의 과잉 진입, 종합편성채널 도입, 통신사업자의 영향력 확대 추세 속에 미디어 생태계가 크게 훼손되었다.
-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는 사회구성원 누구나 경제적, 지리적, 신체적 차이에 관계없이 필요한 최소한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고 직접 참여. 발언할 권리를 보장하며, 프라이버시권과 미디어 다양성을 향유하는 환경의 구축을 의미한다. 방송.통신사업자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도 이같은 미디어 생태계의 선순환에 복무하는 가운데 산업적 발전을 이뤄야 하며, 규제기구 역시 시민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우선으로 규제.진흥 정책을 펼쳐야 한다. 정치는 자본의 이해를 따르기보다 시민의 생존과 생활의 권리를 실현하는 법제도 및 문화적 조건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 발전에 조응할 수 있다.
- 이명박 정부는 방송장악에 따른 방송의 독립성 훼손, 방송시장 획정에 따른 무료보편

적서비스의 배제, 소유.겸영 완화 정책에 따른 독과점의 강화 등을 초래함으로써 시민은 단지 방송과 통신 서비스를 능력에 따라 소비하는 이용자의 지위로 내몰았다. 정부는 미디어 관련법 제개정(방송법, 신문법 개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정)을 한 축으로, 규제기구의 방송.통신정책을 한 축으로 일관된 미디어정책을 추진했다.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는 미디어 환경 진단과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구상으로 보편성으로서의 '공공성'과 '지역성', '미디어주권'을 주요 키워드로 하는 정책 대안을 준비해왔다. 공영방송의 공공서비스방송으로의 재편을 통한 무료보편적 로컬미디어의 실현,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유료방송 독과점 규제 및 이용자 미디어 권리 보장, 종편 피피 규제, 시민의 표현의자유와 시민미디어 활성화 등 미디어 과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논의해온 정책을 바탕으로 미디어 관련 법제도 제개정을 위한 연구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법 제개정 연구 작업은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실현을 위한 중대한 과업이 될 것이다.

○ 연구 대상 미디어 관련법

- 방송법 (2000~현재)
- 방송문화진흥회법 (1987(2000)~현재)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2000~현재)
- 한국방송광고공사법 (1980~현재)
- 미디어렙법 (2012년 제정(예정)
-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2008~현재)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2010~현재)
-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1987~현재)
- 전기통신기본법 (1983~현재)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2004~현재)
-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2003~현재)
-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2005~현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1986~현재)
- 통신비밀보호법 (1993~현재)
-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디지털전환과디지털방송의활성화에관한특별법 (2008~현재)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2008~현재)
- 전파법 (1961(2000)~현재)
- 헌법
- 정부조직법
- 공직선거법
- 공정거래법
- 기타

○ 참여 주체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정책보고서 필자/필진
- 학계 언론전문가, 행정전문가, 법조전문가
- 정당 미디어 전문위원

○ 전체 일정

- 2월16일(목) : 1차 전체워크샵. 연구계획 확정
- 3월초순 : 4월총선 미디어 공약 제안
- 3월중순 : 2차 전체워크샵. 법 제개정 방향 보고
- 4월말 : 3차 전체워크샵. 주요 내용 종합토론
- 5월말 : 4차 전체워크샵. 종합보고
- 6월 : 대국민 종합발표회
- 7월 : 개정법안 발의
- 11월 : 2013 미디어 정책 발표
- 12월 : 미디어법 제개정안 입법

6.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선언문

현실이 된다, 시민 미디어의 꿈!!

이명박 집권 5년차, 시민은 미디어를 몽땅 빼앗겼다. 신자유주의 국가, 이념, 제도가 미디어를 포섭했다. 국가권력과 자본권력이 미디어를 강탈했다. 권력은 시민을 배신하고 시민의 미디어 주권을 유린했다. 주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이고 반사회적인 약탈국가, 치안국가 바로 그것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들의 직접적이고 자유로운 표현과 소통 행위마저 억눌렀다. 저널리즘 실천의 뜻있는 언론인은 징계와 퇴출 목록에 올랐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저널리즘 생산의 토대가 시나브로 붕괴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방송을 장악하려고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켰다. 방송 때문에 정권을 빼앗겼다는 트라우마와 방송을 장악해야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는 히스테리의 합작품이다. 조선·중앙·동아 종편 도입은 정치 보은이었고 동시에 정권재창출을 위한 미디어 2중대의 구축이었다. 시민에 대한, 미디어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의 산물, 수구보수세력만의 안위를 위한 치안 통치의 산물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규제 완화의 외피를 쓰고 소유·겸영의 경계를 허물었다. 미디어자본은 독과점의 자유를 누리고, 시민은 가입비와 이용료를 내고 콘텐츠를 구입하는 소비자로 전락했다. 방송시장 획정 횡포로 미디어의 전부를 시장에서 사고파는 물건으로 뒤바꿔놓았다.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업자를 시장 질서 안으로 끌어들였다. 프로그램을 팔아서, 프리미엄 광고료를 챙겨서 경쟁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정치권력의 주문에 호응하여 무료보편적 서비스, 공적 서비스의 책무를 망각했다.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 간의 재전송을 둘러싼 이권 쟁탈에 시민의 미디어 접근권은 풍비박산 났다. 저작권을 둘러싼 수직적 갑을 관계가 지배하는 외주제작 현장에는 저임금 방송노동자가 양산되고 있다. KBS는 호시탐탐 수신료 인상에 눈독을 들이지만 공적 서비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MBC는 허울 좋은 공영을 말하면서 자사 광고판매회사 설립 유혹에 빠져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를 묻게 한다. SBS는 구성원들을 이중으로 착취하는 지주회사체제 울타리를 치는 한편 지상파방송의 상업화를 선도하고 있다. 사태가 이러할진대 시민이 안중에 있을 리 없고, 나오거나 말거나 디지털 전환에, 무료보편적 서비스에 관심을 가질 리 없다.

몰상식한 예외 사태들이 규칙이 되고, 배제와 박탈의 예외상태가 합법과 합리의 이름

을 갖는 세상이 되었다. 기본권을 빼앗긴 시민들이 더이상 기댈 곳이 없어졌다는 것, 믿을 데가 없어졌다는 것, 이것이 이명박 집권 5년차, 대한민국 시민들이 가슴 졸이며 조우하는 미디어 생태계, 미디어 공공영역의 실체다.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는 이제 미디어 종사자와 시민사회 모두의 절체절명의 관심사가 되었다. 출발은 시민 스스로 직접 정치에 대한 열망과 실천 의지로 언론/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승인하는 것이다. 절대 양도할 수 없는 언론/커뮤니케이션 주권을 위해, 공영방송의 영역을 넘어 확장된 미디어 영역에서 정치의 공간을 열어나가야 한다.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발전 경로로서 보편성으로서의 공공성, 지역성, 주권 실현의 의지를 분명히 할 때이다. 여론 다양성은 미디어 생태계의 물줄기이다. 여론 다양성을 꽃피우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인터넷 심의제도를 폐지하되 대체 방안을 내고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비영리적 이용의 공정이용 보장과 저작권 등록제 추진으로 저작권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장애인의 미디어에 대한 질적인 접근성을 높여 장애인의 미디어 권리가 보편적인 시민의 권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규제/진흥의 총아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 생태계를 복원하는 규제/진흥 기구로 거듭나야 하고, 언론과 시민 감시/통제의 산실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소 심의의 원칙 속에 민주적 심의 기구로 재편해야 한다. 통신심의는 폐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한 언론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정당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정책도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

시장의 늪에 빠져 각자도생의 경쟁체제로 재편된 지상파방송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미디어산업에 대한 유·무료 공공성 획정으로 무료보편적 서비스를 회생시켜야 한다. 국민의 전파, 시민의 수신료, 국가의 기금을 사용하면서 유료방송사업자와 똑같이 행동하는 지상파방송은 청산하는 게 순리다. 지상파방송과 미디어지주회사가 한 울타리에 공존하는 일은 서둘러 매듭지어야 한다. 규제체제와 각 방송사의 지배구조, 재원구조의 다양화, 공공서비스방송을 포함한 확장된 공공서비스미디어 정책과 함께 새로운 지상파방송 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무료보편적 서비스를 하는 지상파방송에게는 공적 지원과 민주적 규제를, 유료방송사업자와 똑같이 처신하는 지상파방송에게는 일반 프로그램공급자의 길을 가도록 길을 열어주면 된다. 유료방송서비스시장은 약탈과 경쟁 대신 공정경쟁 환경 속에 콘텐츠 다양성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힘없는 일반PP가 부당한 계약 관계로 조롱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종편을 포함한 유료방송과 지상파방송을 중심으로 한 무료보편적방송의 유·무료공공성 획정 및 유·무료 수직 규제/진흥 정책은 시민의 지지 속에 방송의 공적 기능과 역할을 살리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의 유력한 방안이 될 것이다. 서울도 지역, 진주와 광주도 지역, 덩그러니 텔레비전 한 대만 있는 두메산골도 하나의 지역으로 간주하는,

무료보편적 로컬미디어로 거듭나는 지상파방송 시스템이 요구된다. 여기에 풀뿌리 공동체방송이 호혜적으로 어울리도록 배려해야 한다. 전파를 사고파는 행위는 제한하되 공공적 활용에 만전을 기하고, 난시청 해소와 차세대 무료보편적 서비스를 위해 700MHz 방송용주파수의 용도를 분명히 하고, 통신용 주파수에 대한 공공적 규제도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올해 12월 31일 아날로그 전송이 중단되는 순간 예고되는 불행한 사태는 미리 막아야 한다. 범국민적 헌법 소원으로 국가와 정부의 디지털 전환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대처해야 한다. 시민의 동의 속에 적정한 수신료 인상을 논의하되 텔레비전을 켜면 누구나 볼 권리가 향유되는 수신 환경을 갖추어야 하고, 산정과 배분에 있어 KBS의 배타성을 극복하고 지역성을 최선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공영방송 규제감독기구인 KBS, EBS, MBC방문진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에 있어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민주적 해법이 필요하고, 시청자 주권의 이름으로 시청자위원회의 대안을 제시하는 일도 늦출 수 없다. 아울러 편성규약을 손질해 방송의 독립과 제작자율성을 보장하는, 창의가 넘실대는 제작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조선·중앙·동아 종편은 재허가 시점이 오기 전에 '국회 재논의'에 부쳐 반드시 위법, 위헌의 꼬리표를 떼야 한다. 5.16쿠데타의 산물인 정수장학회는 주인을 찾음과 동시에 사회로 환원하고, 18대 국회가 방치한 광고판매회사제도에 대한 공공적인 대책 제시도 늦출 수 없다. 프레스펀드 조성으로 풀뿌리신문을 포함한 신문산업을 진흥하되 여론다양성을 위한 공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플랫폼, 네트워크, 컨텐츠 등 모든 레이어에 이용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인터넷을 움직이는 규칙에 대한 통제권을 두고 망을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중립성 논의를 해야 한다. 이로부터 유·무료 플랫폼을 횡단하는 모든 이용자가 불편을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망 정책, 단말 정책, 콘텐츠 지원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궁극적으로 보편적 접근권과 퍼브릭엑세스권을 통해 시민이 모든 플랫폼에서 제작 참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살아있는 시민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와 시민의 언론/커뮤니케이션 주권 실현은 곧 시민의 언론·표현의 자유의 구현이요, 자유·공평의 주권재민을 구현하는 길이다. 시민의 미디어, 꿈을 펼칠 때가 되었다. 곧 현실이 된다.

2012년 2월 7일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정책보고서 판매 안내]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2012 정책보고서 ①
미디어 개혁과 시민의 권리
크라운판형 671쪽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2012 정책보고서 ②
공공미디어와 미디어 균형발전
크라운판형 657쪽

'2012 정책보고서' 의 가격은 1세트(2권) 10만 원으로 다소 과합니다만
판매수익은 2012년 미디어법 제개정을 위한 후속 연구사업에 투명하게 사용됩니다.

〈문의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코디네이터
유영주. 010-9948-8243. combycom@jinbo.net
추혜선. 010-7773-1817. lowskysora@hanmail.net